수시연구 2023-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방안 연구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Aquaculture Tax Exemption

이정필 · 임경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시연구 2023-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Aquaculture Tax Exemption

이정필 · 임경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이정필, 임경희**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정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임경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기간	2023. 5. 10. ~ 2023. 11. 9.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이정필 연구총괄, 제 1-5장
내부연구진	임경희 제 5장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기창 서우회계법인 회계사 백주현 수산업협동중앙회 팀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가와 지역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환경보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다. 또한 수산물은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양식어업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 어촌 관광자원화, 국경 감시,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이슈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양식어업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식량 생산과 수산물 수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면적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업으로 인정되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로어업과 달리, 양식어업은 부업으로 간주되어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식어업 종사자와 어로어업 종사자 간에 혜택의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양식어업은 조세 감면 또는 혜택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 근거를 제시하고, 비과세 범위에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양식어업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살펴보고,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반대 의견서와 조세소위의 비과세 확대 반대 논리를 고려하여 양식어업의 비과세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동향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 어업 간, 산업 간 불형평성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양식어업의 소득통계를 비롯하여 관련 통계의 왜곡, 편향성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통계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더불어 양식어업의 분류 기준(주업과 부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양식어업 종사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거 어느 때보다 양식어업과 관련한 정책 전반을 일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현시점에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양식어업이 변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 연구는 수산연구본부 이정필 전문연구원, 임경희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세제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황준성 과장, 김선하 사무관, 박민혜 주무관, 수협중앙회 백주현 팀장, 서우회계법인 김기창 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조사관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유익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문위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달곤·배준영 두 국회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심사와 감리를 맡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분들과,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xiii

01 서론 _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8
4. 정책화 활동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02 양식어업 현황 및 분석 _19

제1절 양식어업의 역할 19
1. 지역 기간산업인 양식어업 19
2. 국토 활용, 영토방위 기능의 양식어업 22
3.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양식어업 25

제2절 양식어업의 생산·경영 분석 27
1. 생산분석 27
2. 경영분석 31

제3절 양식어가 실태 및 문제점 39

03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분석 _47

제1절 해외 제도 분석 47
1. 중국 48
2. 일본 51
3. 러시아 54
4. 노르웨이 56

제2절 국내사례 검토 57
1. 농수산업 비과세 제도 57
2. 업종별 비과세 연혁 60
3. 농어업간 세제 비교 66

제3절 시사점 69

04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쟁점 및 합리화 방안 _71

제1절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쟁점 71

제2절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84
1.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기본방향 84
2.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87
3. 비과세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89

제3절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90
1. 지역 소멸 측면의 기대효과 91
2. 산업화, 지속가능성 측면의 기대효과 92
3. 식량과 단백질 공급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93

05 결론 _97

제1절 연구 요약 97

제2절 결론 99

참고문헌 _103

표 목차

〈표 1-1〉 연구의 포괄적 범위 ····· 6
〈표 1-2〉 연구 내용 ····· 8
〈표 1-3〉 연구 추진방법 ····· 10
〈표 1-4〉 정책협의회 수행 실적 ····· 12
〈표 1-5〉 주요 선행연구 ····· 15
〈표 2-1〉 어업별 생산금액 ····· 19
〈표 2-2〉 지역 수산물 수출금액(2022년) ····· 21
〈표 2-3〉 대표 양식지역 비교 ····· 22
〈표 2-4〉 지역별 양식어가 판매금액별 가구수 ····· 23
〈표 2-5〉 동물성 단백질 공급 수산물 생산량 추이 ····· 30
〈표 2-6〉 1인 1일당 공급 단백질 '11~'20년 ····· 31
〈표 2-7〉 2021년 농업과 수산업 소득 비교 ····· 33
〈표 2-8〉 연도별 어업 및 농축산소득 현황 ····· 34
〈표 2-9〉 연도별 어업 및 농축산업의 부채현황 ····· 35
〈표 2-10〉 2019년 기준 양식 대표품목 생산경영비 ····· 36
〈표 2-11〉 축산 농가와 양식어가의 각종 지표 비교 ····· 38
〈표 2-12〉 어가 및 어가인구 ····· 41
〈표 2-13〉 연령별 어가인구(2021-2022년) ····· 42
〈표 2-14〉 귀어현황 ····· 43
〈표 2-15〉 연도별 어종별 배합사료 가격 변화 ····· 44
〈표 2-16〉 전력 요금 인상자료 ····· 45
〈표 3-1〉 농업소득 비과세 연혁 ····· 60
〈표 3-2〉 축산업 소득 비과세 연혁 ····· 62
〈표 3-3〉 어업소득 비과세 연혁 ····· 63
〈표 3-4〉 농가부업소득 수·축산업 관련 비과세 주요 변경사항 ····· 65
〈표 3-5〉 어업과 농업간의 불공평 세제 검토 ····· 68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양식어업의 분류 ····· 72
〈표 4-2〉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 73
〈표 4-3〉 통계청 어업 소득에 대한 주업어가와 부업어가 용어해설 ····· 74
〈표 4-4〉 농가부업의 축산의 비과세 범위 확대 관련 자료 ····· 77

〈표 4-5〉 축산 대표품목의 농가별 소득 및 비과세 혜택 금액 추정 ····· 78
〈표 4-6〉 전국 1차 산업의 판매금액별 농어가 수 비교 ····· 79
〈표 4-7〉 '21년 기준 총수입 대비 소득율과 부채비율 ····· 80
〈표 4-8〉 양식어업비과세 범위확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 82
〈표 4-9〉 기타 어업인의 어업외 겸업종류(2021년 기준) ····· 83
〈표 4-10〉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겸업 여부(2021년 기준) ····· 84
〈표 4-11〉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기준의 차이 ····· 86
〈표 4-12〉 소득세법 개정안 ····· 89
〈표 4-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90

그림 목차

〈그림 1-1〉 대외 여건변화 ····· 2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 9
〈그림 1-3〉 국회 정책토론회 ····· 13
〈그림 2-1〉 지역별 천해 양식장 분포 현황 ····· 24
〈그림 2-2〉 주요 단백질 공급원별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기준) ····· 26
〈그림 2-3〉 해조류를 활용한 도심내 공기정화기(세르비아) ····· 27
〈그림 2-4〉 수산물 어업별 생산 동향 ····· 28
〈그림 2-5〉 우리나라 천해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 29
〈그림 2-6〉 양식어가 수 추이 ····· 32
〈그림 2-7〉 국내 양식산업 상황 ····· 40
〈그림 3-1〉 2021년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 59
〈그림 4-1〉 축산 농가 비과세 범위 ····· 75
〈그림 4-2〉 소득세 집행기준 상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76
〈그림 4-3〉 판매금액별 농어가 수 구조 비교 ····· 81
〈그림 4-4〉 양식어업 비과세 개선안 ····· 88
〈그림 4-5〉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의 산업적·사회적 기대효과 ····· 95
〈그림 5-1〉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102

약어 목록

- CIT(기업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UAT(통합 농업세): Unified Agricultural Tax
- FOB(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양식어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면서 양식어업의 식량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면적 기능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제시

2. 국내외 조세특례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양식어업의 비과세 혜택 불평등 근거 제시

3. 양식어업 비과세 혜택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외사례(중국,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를 통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양식어업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에 대해 탐색하고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

4.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반대논리(국회 조세소위 속기록, 반대의견서 등)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타업종과의 비교분석, 법률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

5. 담당 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와의 정책협의회, 국회의원 주도의 국회 토론회 발제를 통해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합리적인 비과세 혜택 주장의 논리와 타당성 확보

▌정책제안

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통계상 부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2. 단기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비과세 소득 5천만 원으로 확대 필요
3. 농·어업간 차별적인 세제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면세유, 법인세 등
4. 양식업 비과세 혜택을 장기적으로 수입금액 10억 원으로 확대 필요

요 약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 임경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비과세 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
  - 현행법상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으로 인정되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으로 간주해,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동일하게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한도 기준이 상이함
- **양식어업은 조세 감면 또는 혜택의 조건이 충족되나,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됨**
  - 전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거나 혜택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고 산업이 국가경제와 지역 유지 등 확고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됨
- **1차 산업 간 비과세 혜택이 달라 양식어업 종사자의 차별적 대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어촌 유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양식어업은 비과세 혜택에 있어 어로어업, 농업, 축산업과 비교시에도 양식어업 종사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 현재 소멸되고 있는 어촌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귀어귀촌 정책과 괴리를 보이는 정책으로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과제목표: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국정과제 73-5〉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 어업인 지원 주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동향 논의
- 농·어업 및 어로·양식어업간 과세 형평 문제 해결방안 검토

〈표 요약-1〉 국정과제 연계성

구분	본부	분류	과제명
국정과제	해양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73-5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의 목적

▪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 근거를 제시하고 비과세 범위에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5천만원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연구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한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림 요약-1〉과 같은 연구 체계를 정립함

- 첫째, 양식어업의 중요성, 비과세 조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양식어업 특성과 기능에 대한 조사와 비과세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
- 둘째, 타 1차 산업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받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양식어가에 실태 분석, 타 1차 산업과의 비교분석 등을 수행함
- 셋째,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비과세 확대 반대논리 검토를 통해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 수정과 개선을 제안함

〈그림 요약-1〉 연구 방법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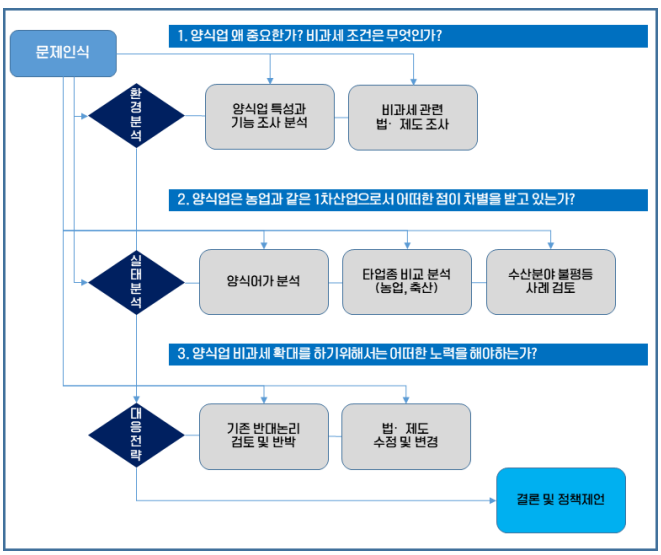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특징

- **양식어업의 특징과 기능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함**
  - 양식어업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친환경적 생산과 미래 식량자원, 어촌유지와 국토활용 측면에서의 양식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동향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 어업간, 산업간 불평등의 근거를 제시함
- **양식어업의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식어업과 타 1차 산업간의 산업적 형평성을 논의함**
  - 양식어업의 소득통계를 비롯하여 관련 통계의 왜곡, 편향성에 대한 내용을 통계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더불어 양식어업의 분류기준(주업과 부업)에 대한 논의를 수행함
  - 농업, 축산업, 양식어업 간의 비과세 범위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에 따른 영향을 논의함
-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반대 의견 등에 대한 국회 조세소위 속기록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제시하여 비과세 확대 타당성을 확보함**

3. 연구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조세소위 속기록과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쟁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주업과 부업의 분류: 양식어업의 부업 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양식어업의 전업화와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통계청 등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업과 부업의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고, 국세청 주업종 기준 등에 따라 양식어업의 주업 분류가 타당함

-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고려: 축산업과의 비교시 축산업은 농민이 축산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양식어업의 경우 전업화와 규모화로 인해 부업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농가, 축산농가, 어로어가, 양식어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수산어민(어로+양식)은 '19년 어로어업 비과세 범위 확대시 크게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축산업의 세부적인 집행기준 배려항목에 비하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 대규모 양식어가 문제: 평균값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경영비, 부채비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경영비 과다에 따른 소득율은 축소되고 수입의 많은 부분이 차감되어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힘듦
- 정부의 비과세 범위 축소 기조: 주식과 부식의 개념에 대한 주장은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가치와, 양식어업의 다원적 기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또한 어촌 소멸 방지, 국토방위, 지역유지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귀어귀촌 정책과는 동떨어진 기조임
- 어로어업의 주업 인정에 따른 비과세 확대 효과: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겸하고 있는 어업인은 전체 9.4%에 불과

-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식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수산업 전체를 농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1차 산업인 어업과 농업 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 간 형평성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소득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첫째, 어업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식어업도 어로어업과 동등한 주업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부채수준도 높으며,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과 경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양식어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양식어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양식어업의 비과세를 확대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귀촌·귀어 촉진, 양식어가 소득 증대,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물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동물성 단백질원의 주요 공급원인 축산업과 양식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5천만 원 확대 제안**

- 조세특례의 특징은 도입 후 기득권화되어 일몰 연장이 상시화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최근 국가 조세문제로 인해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훨씬 부족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확대를 제안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정책협의회 3회 이상 개최**

- ’2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주관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TF 기획회의
  - 참석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회의내용: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관련 향후 계획 및 업무 분배
- ’23년 4월 20일: 정책협의회 1차 중간점검 회의(수산정책과 주관 중간점

검 및 국회공청회 계획 수립 및 세부 계획안 논의)

- 참석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회의내용: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관련 국회 공청회(5월 22일) 계획 논의 및 발제 자료 검토

– '23년 5월 10일: 정책협의회 2차 중간점검 회의(수산정책과 주관 발제자료 검토 회의)

- 참석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23년 5월 22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달곤, 배준영 국회의원 주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양식산업의 중요성 강조,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비과세 합리화에 대한 주제 발표 진행

〈그림 요약-2〉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 농축수산신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34(검색일: 2023. 5.28.)

▪ **전문가 자문회의**

- 수협중앙회 소속 회계사, 전문 회계사, 세무학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담당자 등과의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한 연구 논리 타당성 확보와 비과세 범위 산정을 위해 5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수산 주간지, 전문지 등 관련 원고 투고를 통해 정책화 기여**

- 농축수산신문, 한국수산신문, 수산양식(전문지) 등에 양식어업 비과세 5천만 원 확대를 위한 원고 3회 게재를 통해 정책화 홍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이슈화에 기여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해 제도 및 법 개선 제안**

- (제도) 주업과 부업의 개념 명확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필요
- (법) 조세특례법 개정,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필요: 축산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한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필요, 어업법인 관련 제도 개선

▪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5천만 원 확대 제안**

〈그림 요약-3〉 양식어업 비과세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 **(정책적 기대효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 양식어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여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높아진 비과세 기준에 따라 기존 어업소득을 과도하게 낮게 신고했던 어업인들의 소득 현실화를 통해 통계 개선,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식업의 지위 상승
-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 (5년간 408억 원 예상)

▪ **(산업적 기대효과)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과 비과세 불균형 해소**

- 동일 어업인간 과세불균형 해소 기여, 양식어가의 실익 증대, 부채 감소와 같은 어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향후 양식 수산물 품종 및 가격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기대효과) 인구 고령화, 어업 종사자 감소 문제에 대한 세제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과세 불균형 해소 통해 어촌과 어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활력 창출이 기대됨**

〈그림 요약-4〉 비과세 확대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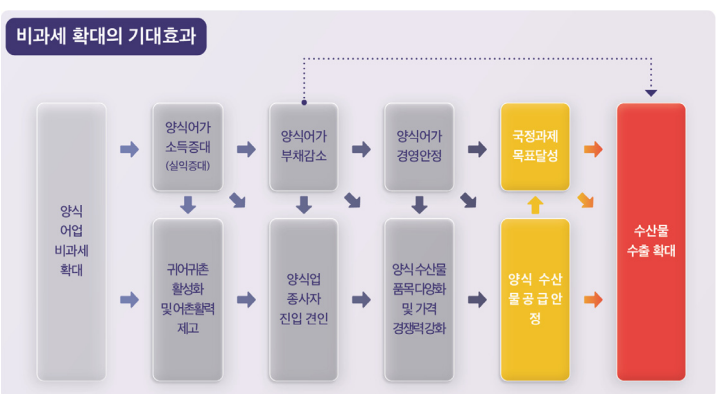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Aquaculture Tax Exemption

Jung-Phil Lee · Kyoung-Hee Leem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tax exemptions in South Korea.
  - Under current law, income from fishing is considered the primary occupation and is eligible for tax exemption up to 50 million KRW, while income from aquaculture is considered a secondary occupation and is eligible for tax exemption up to 30 million KRW, creating an unequal threshold.
- Aquaculture is eligible for various tax reductions and benefits, but it remains the outside the scope of tax exemption benefits.
  - Despite the clear economic and regional significance of

aquaculture, it is excluded from tax exemption benefits, even when it qualifies for other tax reductions and benefits.

-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quaculture workers compared to those in other primary industries continues, and addressing this disparity is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especially for the sake of maintaining coastal villages.
  - In terms of tax exemption benefits, aquaculture workers receive unequal treatment when compared to those in fish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 To promot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ax exemptions for aquaculture, considering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to encourage returning to and revitalizing rural areas, which is inconsistent with existing policies.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National Project 73〉 Prosperous Coastal Villages, Vibrant Oceans.
  - Task Objective: Enhanc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come of coastal residents to the level of urban citizens.
- 〈National Project 73-5〉 Strengthen the Fisheries Industry Stabilization Network, including a revision of the Public Welfare Fisheries Fund.

- Discussing trends in extending the expiration date of major tax exemptions for fisheries sector support.
- Examining solutions to address tax equity issues between agriculture, fishing, and aquaculture sectors.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Category	Division	Classification	Project Name
National Project	Ocean	73	Prosperous Coastal Villages, Vibrant Oceans
		73-5	Strengthening the Fisheries Industry Stabilization Network, including a revision of the Public Welfare Fisheries Fund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3) Purpose

-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aquaculture as the primary occupation and to secure justification for amending the Income Tax Act to include "aquaculture" within the tax exemption scope, thus applying the same 5 million KRW tax exemption limit as in the case of fishing income.

2. Methodology and Features

1) Methodology

-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ax exemptions for aquaculture, three key issues were identified, and an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was established for efficient issue resolution.

- First, research and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aquaculture, as well as an analysis of tax-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analysis aimed at assessing the significance of aquaculture and reviewing tax exemption criteria.
- Second, to evaluate the areas in which aquaculture is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other primary industri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quaculture,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primary industries, and related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 Third, to develop a strategy for expanding tax exemptions for aquaculture, a logical framework for aquaculture tax exemption expansion was presented by reviewing opposing arguments to existing tax exemption expansion and proposing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s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lowchart of Research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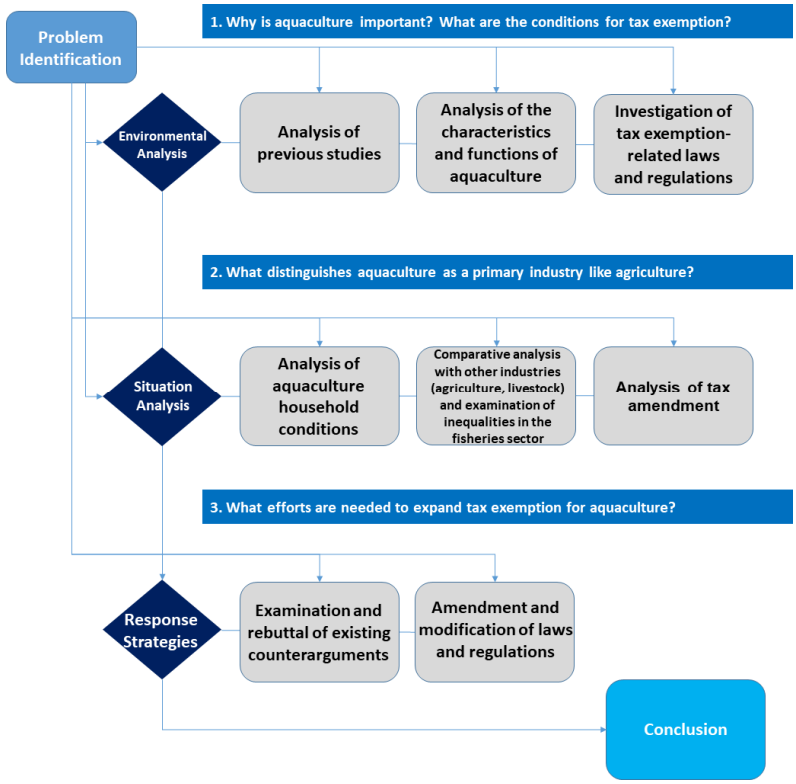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2) Features

- Emphasis 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Aquaculture'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 The study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aquaculture'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by highlighting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ion, future food resources, rural sustainability, and national land utilization.

- Analysis of tax exemption trends and the current state of primary industries, with a focus on aquaculture, was conducted. This analysis identified the basis for inequality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 Through discussions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quaculture, the research addressed the industrial fairness between aquaculture and other primary industries.

- The study diagnosed statistical distortions and biases in income statistics, along with discussion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quaculture (primary and secondary occupations).
- Comparative analysis of tax exemption ranges between agriculture, livestock farming, and aquaculture was carried out through simulation analysis, and the impact of expanding tax exemptions for aquaculture was discussed.

▪ By reviewing National Assembly Subcommittee records related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s for aquaculture and presenting counterarguments, the research secured justification for the tax exemption expansion.

3. Result

1) Summary

▪ Counterarguments based on the Subcommittee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Classific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Occup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is no clear justification for classifying aquaculture as a secondary occupation. Additionally, as aquacul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professional and commercialized,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it as a primary occupation based on the criteria established by Statistics Korea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Wage Earners: In comparison to livestock farming, when it comes to livestock farming, it includes cases where farmers consider livestock farming as a secondary occupation. However, due to the professionalization and scale, aquaculture significantly diverges from the concept of a secondary occupation.
- Considering the equity of agricultural households, livestock farming households, fishing households, and aquaculture households, it appears that fishermen (both fishing and aquaculture) received significant benefits when the tax exemption range for fishing was expanded in 2019. However, when compared to the specific execution standards and consideration items for livestock farming, they are receiving unfair and unreasonable treatment.
- Large-Scale Aquaculture Issue: The issue with large-scale aquaculture is attributed to the excessive interpretation of average values and making judgments based solely on sales without considering operating expenses and debt ratios. In such cases, the income rate is reduced due to excessive operating expenses, and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income is deducted,

making it difficult to reflect actual on-site situations.

- Government's Approach to Reducing Tax Exemption Range: The argument based on the concepts of primary and secondary occupations should b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lue as future food resources and the multifaceted role of aquaculture. Furthermore, it deviates from the government's policy of encouraging rural revitalization, national defense, and regional sustainability.
- Expansion of Tax Exemption Effect Based on Recognition of Fishing as the Primary Occupation: The fishermen engaged in both fishing and aquaculture account for only 9.4% of the total.

▪ Considering the recent shift in the paradigm from catching fish in traditional fisheries to aquaculture, it is crucial to actively consider applying tax exemption to aquaculture income in a manner similar to traditional fisheries, or to apply the same level of tax exemption to all types of fisheries, including aquaculture.

▪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income tax exemption between fisheries and agriculture, as well as between traditional fishing and aquaculture, it is essential to thoroughly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and actively explor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income tax exemption system.

- First, recognizing the primary status of aquaculture similar to traditional fishing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mong fishermen.

- Second, consider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quaculture, such as higher income and debt levels compared to traditional fishing, as well as the higher initial investment costs, additional tax incentives for aquaculture are justified.
- Third, expand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imit for aquaculture income can contribute to increased income for aquaculture, the promotion of returning to and revitalizing rural areas, the activation of aquaculture, and stable seafood supply.
- Fourth, considering the equity between livestock farming and aquaculture, both of which produce animal protein sources, is essential.

▪ Proposal to Expand the Tax Exemption Range for Aquaculture to 50 million KRW

- Tax exemptions tend to become entrenched and are continuously extended once introduced. Additionally, due to recent issues with national tax revenue, it is expected that actual tax revenue will fall significantly short of the budgeted revenue, making this a time to consider such circumstances. Therefore, a gradual expansion of the tax exemption is proposed.

2) Policy suggestions and policy-making activities

▪ Policy Council Meetings Held More Than Three Times

- April 10, 2023: Planning meeting for the Aquaculture Tax Exemption Expansion Task Force (TF)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Participant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Policy Division,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Maritime Institute
- Meeting Agenda: Future plans and task distribution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 April 20, 2023: First policy council mid-term review meeting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Participant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Policy Division,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Maritime Institute
- Meeting Agenda: Discussion and review of plans for a national public hear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 May 10, 2023: Second policy council mid-term review meeting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Participant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Policy Division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 Holding of Parliamentary Policy Debates

– May 22, 2023: A parliamentary policy debate titled “Policy Debate for Tax Reform in the Fisheries Sector” was held in the First Small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hosted by Representatives Lee Dal-gon and Bae Jun-young.

– The ev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presented the theme of rationalizing tax exemption, taking into account fairness with agriculture.

[Parliamentary Policy Debate]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 Expert Advisory Meetings

- Five expert advisory meetings were held with experts including auditors from accountant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fessors of taxation, investigato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ies Policy Division. These meetings were conducted to secure the logical validity of the research and to determine the calculation of the tax exemption range for aquaculture.

▪ Contribution to Policy through Contributions to Fisheries Journals and Specialized Publications

- Policy promotion, building public consensus, and policy issue awareness were facilitated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on the expansion of the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up to 50 million KRW) in relevant publications, including - Nongchuksoosan Newspaper, Korean Fisheries Newspaper and Fisheries Aquaculture Journal (specialized journal), with a total of three articles published.

3) Expected Policy Contributions and Other Effects

▪ Proposal for Institutional and Legal Improvements for the Expansion of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 (Institutional)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rimary and Secondary Occupations: Collaboration with Statistics Korea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 (Legal) Amendment of Special Tax Law and Income Tax Law for Tax Exemption: Amendments are required to ensure fairness with industries like livestock farming, as well as improvements in relate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fisheries corporations.

▪ Proposal for Expanding the Tax Exemption Range for Aquaculture to 50 million KRW.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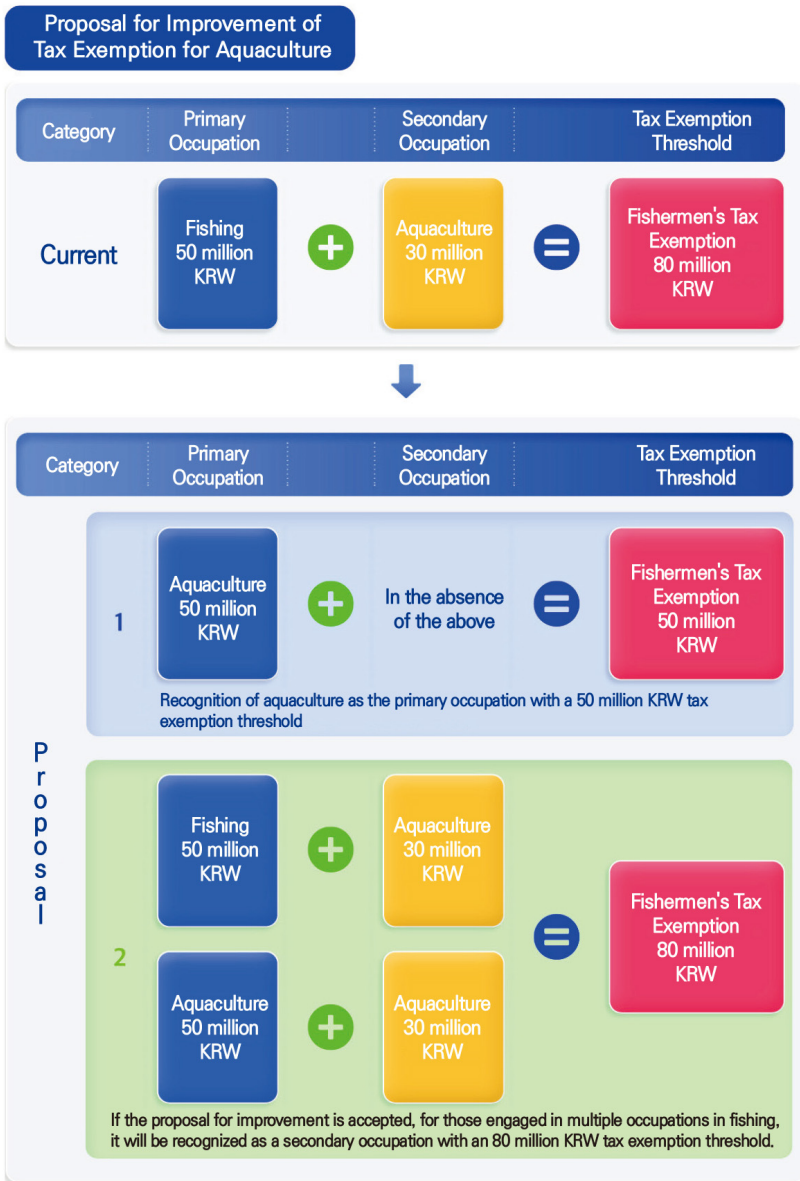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 (Policy effects) Resolution of the Tax Fairness Issue Arising from Different Tax Exemption Ranges for Aquaculture

- It is expected that increasing the overall vitality of aquaculture will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imultaneously, address the issue of underreporting income by fishermen who had previously reported lower income due to the higher tax exemption threshold. This, in turn, is anticipated to improve statistics and contribute to increased tax revenue.
- The status of aquaculture can be raised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 The expansion of the tax exemption range for aquaculture income will result in increased income of aquaculture fishermen (estimated to be 40.8 billion KRW over 5 years)

- (Industrial effects) Resolving the Imbalance in Recognizing Primary Occupations and Tax Exemption for Aquaculture Income

- It is expected that resolving the imbalance in tax assessment among fishermen, encouraging the real benefits of aquaculture, reducing debt, and stabilizing the management of fishermen will contribute to the stable supply of seafood.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products in terms of variety and price in the future.

- (Social effects) It is anticipated that resolving the issue of tax imbalance,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nd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fisheries workers, will bring vitality to the fishermen who are sustaining coastal and fisheries communities.

[Expected Effects of Tax Exemption Expa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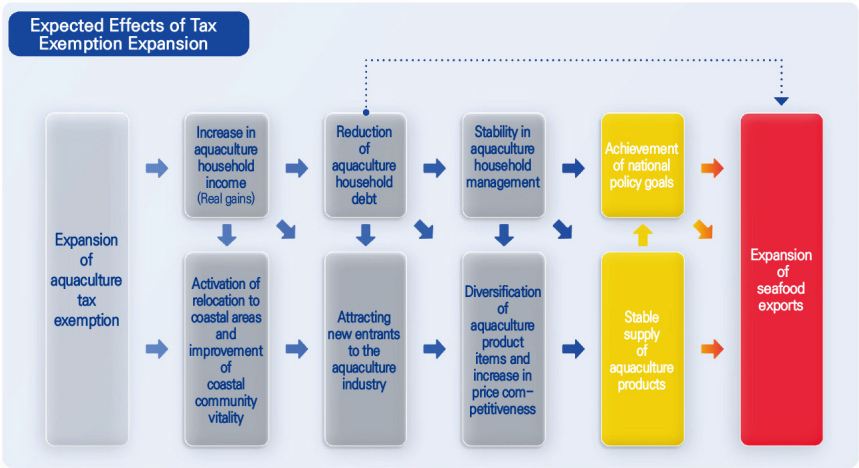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업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수산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환경보전,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산물은 육류 단백질을 제외하면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제공을 책임지므로 수산업은 중요한 식량산업의 하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수산업을 크게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만큼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국가 정책,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양식어업은 식량주권,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식량 산업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과 더불어 굴, 전복 등을 생산하는 생산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어업활동을 통해 소득의 창출 및 고용효과를 이끌어 내 국가와 지역 경제에도 기여한다.

양식어업은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토의 균형적 이용의 원천이자, 낙도지역 거주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관광자원화 제공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경감시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분쟁을 비롯한 이슈가 발발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러-우전쟁이 연달아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야기되고, 경기악화, 인플레이션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양식산업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양식어업이 식량의 주요 공급원이자,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이며, 수산물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림 1-1〉 대외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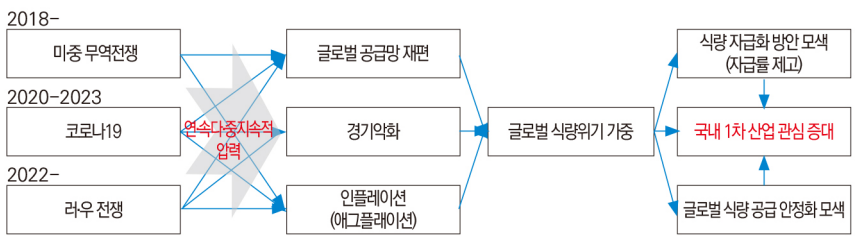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과 기회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에 대한 비과세는 타 1차 산업과 비교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농업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벼, 보리 등)의 소득이 전액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작물재배업소득(채소, 화훼, 과실 등)은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축산업의 경우는 농가부업규모(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과 오리 1만 5,000마리 이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 소득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구조이다. 현행법상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으로 인정되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으로 간주되어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동일하게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1] 한도 기준이 상이하여 비과세 범위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있다.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농업과 어업을 다른 잣대로 평가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양식어업을 식량자원의 생산점이자 공익적 가치가 큰 1차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큰 합의는 인정하면서 지난 2년간의 조세소위 자료 등을 통해 현실을 살펴보면 타산업(농업)등에 비해 소득이 높다거나,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또는 이미 어로 어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양식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

양식어업이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조세 혜택의 목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높은 부분만을 집중하여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 보다 하루빨리 양식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양식산업이 식량자원의 보고로 역할을 해야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국가 식량 기간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듯,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1) 2020년 어업인 소득세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 원→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 원, 양식소득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서 양식어업과 관련한 정책 전반을 일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양식어업의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연구 목적

전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거나 혜택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2)]

첫째, 공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주게 된다.

둘째,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 경기 또는 투자진작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재향군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넷째,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기타 특정국가의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감면 또는 혜택의 목적이 뚜렷하며,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은 지속적으로 비과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 근거를

2) 이삼주(2013), p. 8.

제시하고, 비과세 범위에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양식어업이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있어 소득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업과 부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농가부업소득에 속한 축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소득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또 다른 불공평 세제 중 하나인 어업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검토한다. 어업법인은 농업법인과 설립근거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가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된 양식어업의 주업 인정이므로 농업(축산)을 양식어업의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9년부터 진행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중점적인 검토 대상은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반대 의견

서와 해당 연도 조세소위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주요 양식국(일본, 중국 등) 양식산업의 비과세 동향과 법률을 검토하였다.

〈표 1-1〉 연구의 포괄적 범위

구분	연구대상
관련법	• 소득세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어업법인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산업	• 양식어업, 농업(축산업)
비과세 확대 반대 의견	• 반대 의견서(국회) • 조세소위 속기록
국외	•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외 주요 양식국 비과세 범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비합리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설계된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양식어업이 가지는 가치,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존 조세소위의 비과세 확대 반대 논리를 고려하여 양식어업의 비과세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동향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 어업간, 산업간 불형평성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양식어업의 소득통계를 비롯하여 관련 통계의 왜곡, 편향성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통계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더불어 양식어업의 분류기준(주업과 부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 근거를 제시하였다.

장별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는 양식어업과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비과세 연혁과 기존 쟁점을 열거하여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및 분석'에서는 양식어업의 생산동향을 분석하고 양식어업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생산량과 양식어업의 기능 고찰을 통해 식량 공급 측면과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양식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식어업의 기초가 되는 양식어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실태 분석을 실시하면서 비과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및 세법 검토'에서는 양식어업 관련 세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비과세 확대 논의 측면에서의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음을 강조하고,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외 양식어업 비과세(일본과 중국 등) 현황과 비과세 확대사례를 검토하면서 비과세 확대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4장 '양식어업 비과세 쟁점 및 합리화 방안'에서는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반대 자료인 국회 조세소위 속기록과 반대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양식어업의 비과세 반대논리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도별, 소위별 쟁점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시하면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과세 확대에 따른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 도출과 기대효과를 서술하였다.

〈표 1-2〉 연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시	• 양식어업과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비과세 관련 연혁, 쟁점 열거 • 비과세 확대 필요성 제기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및 분석	• 양식어업의 생산동향 • 양식어업 순기능 • 양식어업 현황 분석	• 양식어업의 특수성, 기능, 역할 제시를 통해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성 강조 • 이에 반한 양식어가, 법인의 실태, 문제점 등의 제시를 통해 비과세 확대 필요성 주장
제3장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및 세법 검토	• 양식어업 관련 세법 현황 • 농업 및 他1차산업 대상 비과세 국내외 논의 동향	• 비과세 확대 논의 측면에서 지속적 차별을 받아왔음을 강조하고, 형평성,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 강조 • 타분야 비과세 확대사례 검토,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한 타당성 강조
제4장 양식어업 비과세 쟁점 및 합리화 방안	• 기존 논지 및 쟁점 검토(기획재정부 및 조세소위 검토안) • 쟁점에 대한 반박논리 대응,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방안 검토	• 반대의견서, 조세소위 속기록 검토를 통해 비과세 관련 법안 개선방안 제시
제5장 결론	• 연구 요약 • 연구 결과 • 정책, 산업적 시사점	• 비과세 확대에 따른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 도출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2〉와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환경분석, 실태분석, 대응전략 마련의 3단계를 거쳐 결론 및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산업적 차별을 탈피하고 1차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양식어업의 특성과 기능,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 목적 중 하나인 소득 비과세에 대해 현황과 산업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법·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양식어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으로서 어떠한 점이 차별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식어가 현황, 실태,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같은 1차 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농업(벼, 축산 등) 타업종 비교분석, 수산분야 불평등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셋째, 대응 전략으로 양식어업 비과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세소위 및 국회 회의록 등에서 제시된 반대논리 검토, 법·제도 수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결론 및 정책제언을 하였다.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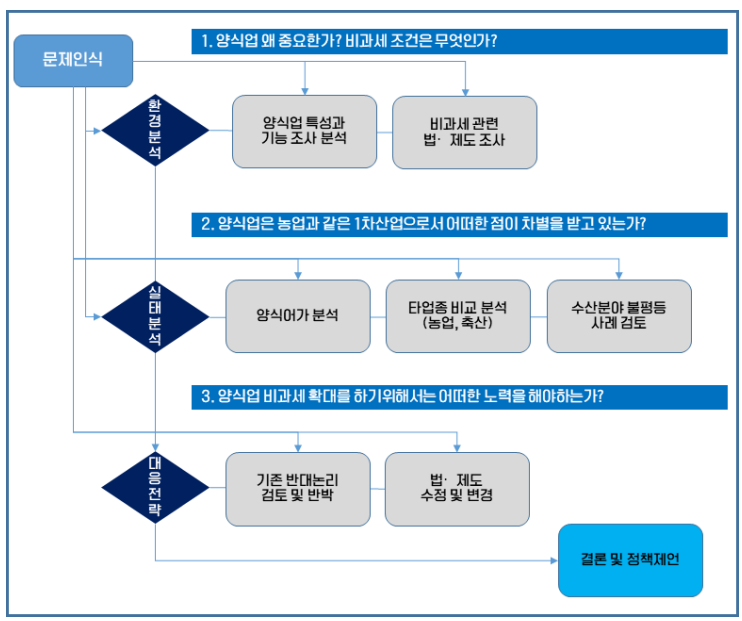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조사, 전문가 자문 및 면담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농업, 축산업, 어업과 관련한 비과세 동향과 최근 논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1차 산업 관련 비과세 현황 및 실태와 주요국 1차 산업 관련 비과세 현황 및 논의 동향, 타 분야 조세 개정 사례 분석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조사는 양식어업 현황분석과 축산업과의 비교분석의 세부 추진과제를 위해 농·축·양식어업의 소득, 부채, 경영비 등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업종별 소득, 수입금액의 비과세 비교, 연도별 비과세 확대 비교 등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자문 및 면담조사는 추진기관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비과세 쟁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담당기관, 학계, 연구소, 전문가 등에 대해 수행하였다.

〈표 1-3〉 연구 추진방법

연구 방법	세부 추진 과제	내용
문헌조사	농·축·어업 관련 논의 동향 및 선행연구	1차 산업 관련 비과세 현황 및 실태
		주요국 1차 산업 관련 비과세 현황 및 논의 동향
		타분야 조세 개정 사례 분석
통계조사	양식어업 현황분석 양식어업과 축산업 비교분석	소득, 부채, 경영비 등의 통계자료 비교분석
		업종별 소득, 수입금액의 비과세 비교
		연도별 비과세 확대 비교
전문가 자문 및 면담조사	기존 비과세 쟁점 추진기관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학계) 세무·회계 전공 교수
		(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연구원 등
		(수산) 수협, 주요 양식품목 수협
		(전문가) 세무회계사

자료: 저자 작성

4. 정책화 활동

1) 정책협의회

본 연구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이에 따른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거친 방향성 제시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 정책협의회는 '2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주관의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TF 기획회의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 및 업무를 분배하였으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차 정책협의회는 '23년 4월 20일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1차 논의된 업무 분배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 국회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계획하면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안의 세부적인 계획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3차 정책협의회는 '23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회 발표 자료 검토, 쟁점 및 논지 검토, 국내 세법, 회계 전문가 섭외 및 자문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1-4〉 정책협의회 수행 실적

구분	일시	회의명	참석기관
1	’2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주관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TF 기획회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3년 4월 20일	정책협의회 1차 중간점검 회의 (수산정책과 주관 중간점검 및 국회공청회 계획 수립 및 세부 계획안 논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 수협경제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23년 5월 10일	정책협의회 2차 중간점검 회의 (수산정책과 주관 발제자료 검토 회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저자 작성

2) 국회 정책토론회

본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22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농축수산신문이 주관하고 이달곤, 배준영 국회의원 주최로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해 양식어업 종사자와 양식관련 수협 대표, 국회의원 네 명을 포함해 학계, 수협중앙회 등에서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통해 양식어업의 중요성 강조,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비과세 합리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림 1-4〉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 농축수산신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34(검색일: 2023. 5.28.)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지 기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담당자, 세무학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수협중앙회 소속 회계사, 전문 회계사 등과의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한 연구 논리 타당성 확보와 비과세 범위 산정을 위해 다섯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수산 주간지, 전문지 등 관련 원고 투고를 통해 정책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축수산신문, 한국수산신문, 수산양식(전문지) 등에 양식어업 비과세 5천만 원 확대를 위한 원고(3회 게재)를 통해 정책화 홍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이슈화에 기여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수산업과 관련한 국내 비과세 연구는 김미복·김수석(2011)과 박주철 외(2021) 정도이다. 김기성(1995)은 수산 분야에서 조세 감면제도에 대한 연구로 수산 관련 조세체계와 주요 세목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법·제도 검토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1차 산업, 특히 수산업과 관련한 비과세, 조세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김미복·김수석(2011) 연구로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가가치세 도입, 농업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 부문 조세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체계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당시 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과세체계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납부세액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통해 결론적인 조세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과세 후 공제와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지원, 환급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서희열 외(2010) 연구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다루고 있는 농어업 법인의 조세 사례를 주제로 법인에 한정하여 조세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조세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정부 지원과 정책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간소화된 조세체계, 과세 기준 명확화, 세제 혜택 강화, 세무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어업과 농업 간의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수산 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1건의 연구인 김기성(1995)에서는 수산 관련 조세체계와 주요 세목을 검토하면서 수산 분야의 조세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조세체계의 구조적인 부분

만을 탐색하였고,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만을 조명하면서 타 산업 부문과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표 1-5〉 주요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 연구자(년도): 김미복, 김수석(2011) • 연구목적: 농업 발전을 위한 부가가치세 도입, 농업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검토	• 문헌조사(법, 정책계획 등) • 법제도 검토 • 현황조사 • 시나리오분석	•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농업인 조세부담을 시나리오 분석 • 소득세체계 분석 • 농업소득세 재도입 검토 • 환급제도 도입 검토
2	• 과제명: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서희열 외(2010) • 연구목적: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법, 정책위주) • 법제도 검토 • 전문가 자문 • 현황조사	• 국외 조세제도 검토 • 정부 지원 정책 분야별 문제점 개선방안 탐구 • 농수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안 제시
3	• 과제명: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 연구자(년도): 김기성(1995) • 연구목적: 국내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련 세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책 제시	• 문헌조사 • 법제도 검토	• 수산관련 조세체계와 주요 세목 검토 • 수산관련 감면세제도 현황 검토 • 감면세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4	• 과제명: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김보남, 김현동(2010) • 연구목적: 조세지원제도들은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즉흥적으로 제·개정된 법령들이 많아 실제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외국 개정, 입법례 조사 • 법제도 검토	• 농지의 개념과 농지에 대한 각 세법상 조세제도에 검토 • 주요국의 농지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현행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법리해석과 판단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 과제명: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박주철 외 (2021) • 연구목적: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 문헌조사(법, 정책, 제도 등) • 기초현황조사 • 수입금액에 따른 비과세소득 분석	• 농어업 비과세 제도 법률 검토 • 비과세 문제점 분석 • 수입금액에 따른 비과세소득 분석 • 비과세 제도 개선방안 제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 • 타산업(축산업 등)과의 비교분석 수행		•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법률 검토 (타당성, 형평성 등) • 타 1차산업 사례 분석(농, 축, 국외 사례) • 양식어업 현황 분석(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을 통해 타산업(축산업)과의 비교분석 수행 • 비과세 확대 반대(기획재정부) 논리 검토 및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논리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적정성 검토(범위, 시기, 대상 등)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이 많지 않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김미복, 김수석, 2011)와 유사한 방법론을 차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양식어업의 중요성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기로 한다.

둘째,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의 타당성,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양식어업의 부업 분류에 대한 탐색, 양식어업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타 연구의 경우 문헌이나 연구자 본인의 판단으로 작성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전문 회계사, 수협중앙회 회계팀, 대학교수 등 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과세 확대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셋째, 타산업(농업, 축산업 등)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면서 양식어업의 차별적 조세혜택, 범위 등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넷째,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국회 조세소위 속기록과 의견서 등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02
양식어업 현황 및 분석

제1절 양식어업의 역할

1. 지역 기간산업인 양식어업

2022년 국내(원양 제외) 어업생산량은 320만 4천 톤으로 2021년 338만 7천 톤 대비 18만 3천 톤(5.4%) 감소했다. 2022년 우리나라 실질 GDP는 1,965조 원으로, 이 중 수산업의 생산금액은 9조 2,800억 원 규모로 전체 국내 총 생산규모의 0.5% 정도이다. 생산금액 순으로는 연근해 4조 원, 해면양식 3조 4천억 원, 원양어업 1조 1천억 원, 내수면 어업 7.5천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어업별 생산금액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률
	(A)	비중	(B)	비중	(B-A)	(B/A)
합계	92,817	100.0	92,413	100.0	-404	-0.4
연근해어업	41,504	44.7	40,370	43.7	-1,135	-2.7
해면양식어업	32,559	35.1	33,843	36.6	1,284	3.9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률
	(A)	비중	(B)	비중	(B-A)	(B/A)
원양어업	13,547	14.6	11,259	12.2	2,288	-16.9
내수면어업	5,206	5.6	6,941	7.5	1,735	33.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3.2.24)(검색일: 2023.4.26.)

국내 총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① 전남(58.3%) ② 경남(16.5%) ③ 부산(7.9%) ④ 충남(4.4%) ⑤ 경북(3.4%) ⑥ 제주(2.5%) ⑦ 전북(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위 전남과 2위 경남의 대표적인 양식어업 활성화 지역은 완도군과 통영시이다.

완도군은 경우 전복, 톳, 김, 미역, 넙치를 양식하는 우리나라 최대 양식지역 중 하나로 총 2만 2천 가구, 4만 7천명의 인구(가구당 2.13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어가 수는 총 1,025가구로 가구당 인구 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2,200명 정도를 직접적인 어업관련 인구수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 양식어업에 88.0%(전체 1,025가구 중 902어가)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지역 대비 어업 및 양식어업에 대한 종사자 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완도군의 지역내총생산[3] 1조 2,600억 원 중 산업별 생산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가장 많은 2,870억 원, 다음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2,587억 원으로 생산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완도군이 1차 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 금액은 31억5천만 불로, 완도군은 이 중 6,96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 중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시군구(199개)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완도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복의 경우 '22년 644억 원

3) 시장가격, 2020년 기준

(4,890만 달러)의 수출금액을 달성했다. 완도군의 주요 양식품종인 전복, 톳, 김, 미역, 넙치가 수출품목 1~5위까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지역 수산물 수출금액(2022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완도군		통영시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수출액 합계	69.6	수출액 합계	55.1
1	전복	48.9	굴	38.3
2	톳	7.2	붕장어	10.6
3	김	6.9	기타어류	2.0
4	미역	3.8	바지락	1.2
5	넙치	1.5	해삼	0.8

자료: 관세청(검색일:2023.4.26.)

경상남도 통영 역시 수산업이 지역의 기간산업인 곳으로 2022년 기준 통영시 전체 12만 3천 명 중 어가 인구가 4,774명(약 4%, 전국 어업인구는 0.2% 수준)에 달하는 곳이다.

양식어업 면허가 905건에 달하는 통영은 대표적으로 굴, 홍합, 멍게 등의 패류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2022년 수산물 수출금액은 약 5,5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시군구 중 13위에 해당하는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22년 굴(수출 10위 품목)의 수출금액은 505억 원(3,830만 달러)을 기록했고 이외에도 우럭, 농어, 흰다리 새우 등의 다양한 품종을 양식한다.

또한 양식어업 관련 각종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어선 관련 조선, 수리산업과 더불어 관련 지역 및 품목 수협, 어망, 사료, 각종 연구 및 지원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소 등) 및 대학들에 종사하는 규모로 추정해 본다면 양식산업이 통영시 전체 경제활동의 60%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간산업이라 볼 수 있다.

〈표 2-3〉 대표 양식지역 비교

완도군	구분	통영시
1조 1,257억 원	지역내총생산 (2020년 기준)	1조 2,600억 원
4만 7천 명	인구수	12만 3천 명
1,025명 (인구대비 어업인구2.2%)	어가인구 (인구대비 어업인구0.2%)	4,774명 (인구대비 어업인구3.9%)
69.6백만 달러 (한화 926억원)	'22년 수산물 수출액 (1달러 기준 1329.8원)	55.1백만 달러 (한화 733억원)
143,343백만 원 (24.68%, 세출항목 중 1위)	지방정부 농림수산분야 재정지출 비중	128,607백만 원 (21.64%, 세출항목 중 2위)
전복, 톳, 김, 미역, 넙치	대표생산 수산물	굴, 붕장어, 바지락, 해삼
1,493건	양식어업 면허	905건

자료: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행정구역별 인구수(검색일: 2023.5.1.); 2022 완도군 어업실태조사(검색일: 2023.5.1.); 2020 통영시 농림어업총조사(검색일: 2023.5.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검색일: 2023.5.1.)

2. 국토 활용, 영토방위 기능의 양식어업

양식어업(내수면어업 제외)은 일반 농업과는 달리 입지상 제약을 많이 받는다. 육상양식의 경우에도 바다에 인접해야 하며,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토지비용+α)이 추가되어 도심지 근처에서는 양식어가가 입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2-4〉 참고). 서울,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는 양식어가의 가구수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 종사자는 자연스럽게 도심 외곽지역을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판매 수산물의 물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양식어업의 구조상 지역적으로 집적된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수협과 같은 공동의 조합을 설립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공동출하, 경매, 물류 등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표 2-4〉 지역별 양식어가 판매금액별 가구수

단위: 가구

구분	판매 없음	~3백 만 원	3~ 5백 만 원	5~ 1천 만 원	1~ 2천 만 원	2~ 3천 만 원	3~ 5천 만 원	5~ 7천 만 원	7천~ 1억 원	1~2 억 원	2~5 억 원	5 억 원 ~
전국	172	1,071	780	874	1,061	978	1,155	981	1,070	1,519	1,335	524
비중 (%)	1.5	9.3	6.8	7.6	9.2	8.5	10.0	8.5	9.3	13.2	11.6	4.5
서울	–	–	–	1	–	–	–	1	–	–	2	–
부산	2	10	13	33	95	54	29	17	24	44	25	2
대구	–	–	–	–	–	–	–	–	–	1	–	–
인천	2	15	4	7	7	2	7	5	2	5	8	3
광주	–	–	–	–	1	1	–	2	–	2	3	–
대전	–	–	–	–	–	–	–	–	–	–	1	–
울산	1	12	11	7	8	16	14	7	4	3	1	2
경기	2	3	2	4	–	1	–	3	10	14	17	3
강원	1	2	1	3	1	2	4	1	6	12	9	4
충북	–	–	–	–	–	1	–	–	–	–	1	–
충남	27	302	287	222	150	56	34	25	25	42	35	8
전북	8	32	17	29	39	30	48	17	31	52	34	10
전남	83	401	270	424	565	632	776	735	782	1,114	903	278
경북	13	35	13	12	11	10	10	10	12	13	22	18
경남	30	251	160	128	178	167	227	149	164	205	250	133
제주	3	8	2	4	6	6	6	9	10	12	24	63

자료: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산물 판매금액별 양식어가(검색일: 2023. 4.26.)

위와 같은 양식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2-1〉에서 지역별 천해 양식장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식어업이 가장 발전한 경남, 전남 등의 2개 도에 약 8,500개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양식장들이 우리 영토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유인도 271개, 무인도 1,885개의 총 2,165개 섬이 있고, 경상남도는 445개에 달하는 섬이 분포해 있다. 이들 섬과 바다의 지킴이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양식 어업인이며, 지도의 가장자리를 빼곡히 채우며 국토의 균형적 이용의 원천이자, 낙도지역 거주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경감시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기능을 수행 중이다.

〈그림 2-1〉 지역별 천해 양식장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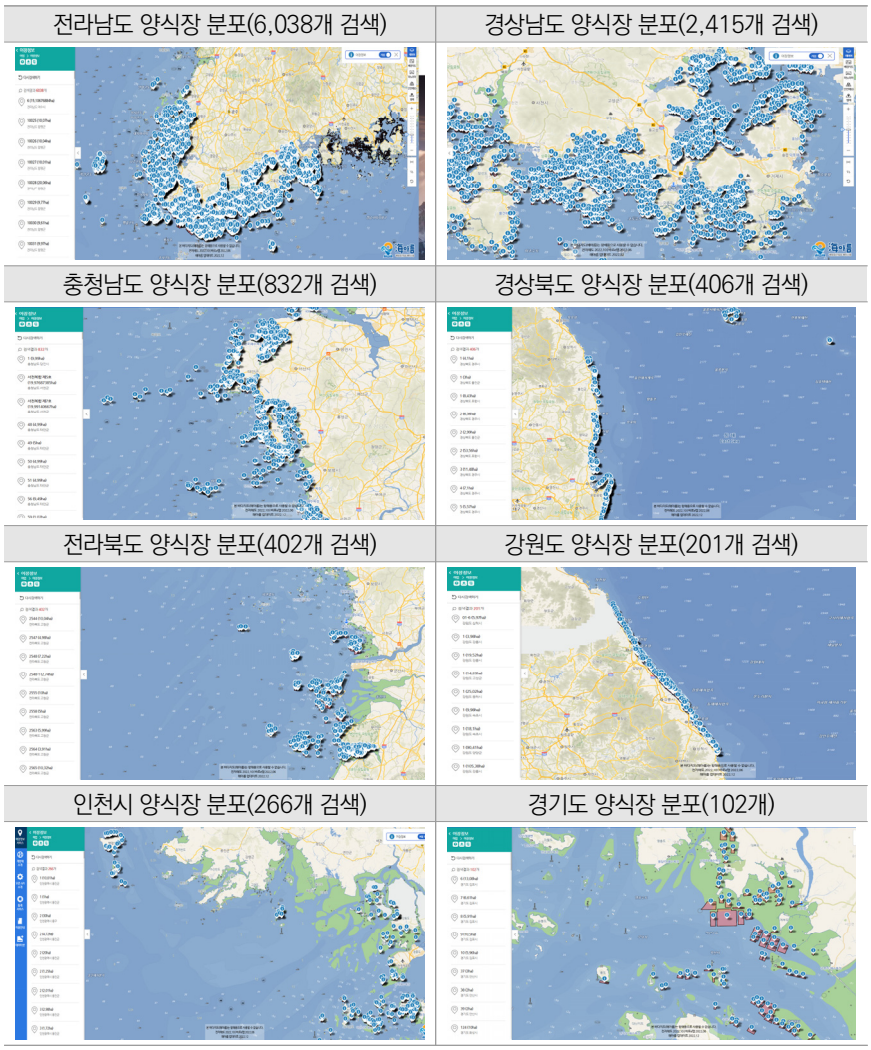

자료: 국립해양조사원(검색일: 2023.4.18.)

3.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양식어업[4)]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는 식량 생산분야의 탄소배출량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어류 소비량의 52%를 공급하는 양식산업은 주요 축산물(소, 돼지, 양 등) 대비 양식수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강도가 낮아 미래 지향적인 식량의 원천이자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업과 양식어업의 생산과정을 비교하면, 양식어업은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 대비 0.45%[5)] 수준이나, 축산업은 14.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 세계 단백질공급량 중 수산물이 7%, 축산업이 33%인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은 단백질 공급량 기준으로 수산업에 비해 6.8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양식수산물의 온실가스 총 배출 추정량은 2017년 기준 245.4톤이다. 반면 소고기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천 톤 이상이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양식수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양, 염소 등은 양식수산물과 배출 수준은 비슷하지만 발생 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약 30kgCO2e/kgCW로 양식수산물의 약 4배 수준이다.

양식어종 중에서도 해조류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는 양식과정에서 톤당 22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1㎢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에서 온실가스를 연간 1,110톤 흡수할 수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해조류 양식업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 패류 역시 탄소 배출량이 낮은 편으로 패류

4) 마창모 외(2022), pp.62-63, 6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5) 2013년 기준 패류 및 어류 양식어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양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톤당 392kg이다. 특히, 굴의 경우에는 메탄을 발생시키지 않고, 생산 시 미미한 양의 아산화질소 및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림 2-2〉 주요 단백질 공급원별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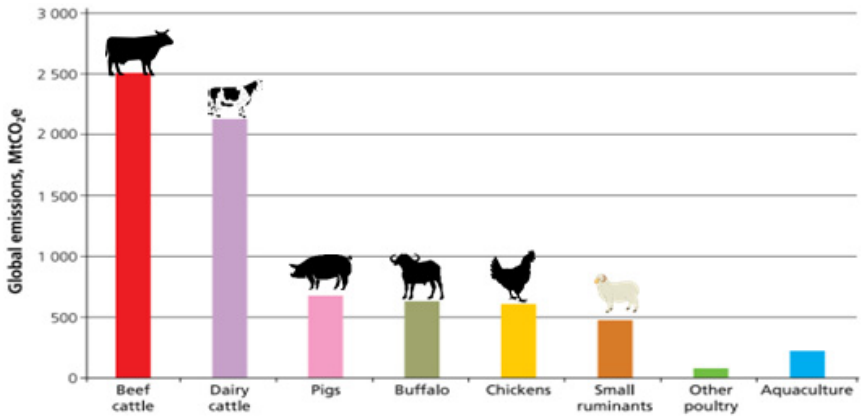

자료: 마창모 외(2022), p.67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위원회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배출하는데, 노르웨이 양식 연어는 쇠고기 배출량의 18% 수준으로 더 낮으며, 고등어는 단지 2%의 배출량을 가진다. 온실가스 배출에는 사료의 양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르웨이 연어는 1kg을 생산하는데 단지 1.15kg의 사료가 필요할 뿐이며, 그 사료 또한 70%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생산된다.[6] 이렇듯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축산업에 비해 훨씬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6) 식품음료신문(2022.6.27.)(검색일: 2023.4.14.)

〈그림 2-3〉 해조류를 활용한 도심내 공기정화기(세르비아)

주: 베오그라드의 액체 나무(Liquid Tree, 일명 LIQUID 3)
출처: 케미컬뉴스(2022.3.14.)(검색일: 2023.4.14.)

제2절 양식어업의 생산·경영 분석

1. 생산분석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2021년 기준 382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21년 약 94만 톤으로 2012년 약 109만 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원양어업 또한 2021년 약 44만 톤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생산량은 연평균 3.0% 감소했다. 반면 해면양식업은 2021년 약 240만 톤으로 2012년 약 149만 톤에서 연평균 5.4%씩 증가했고,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 또한 내수면 양식 생산량 증대에 따른 결과다.

자원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라 해면어업(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등) 의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나, 양식어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수산물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고).

〈그림 2-4〉 수산물 어업별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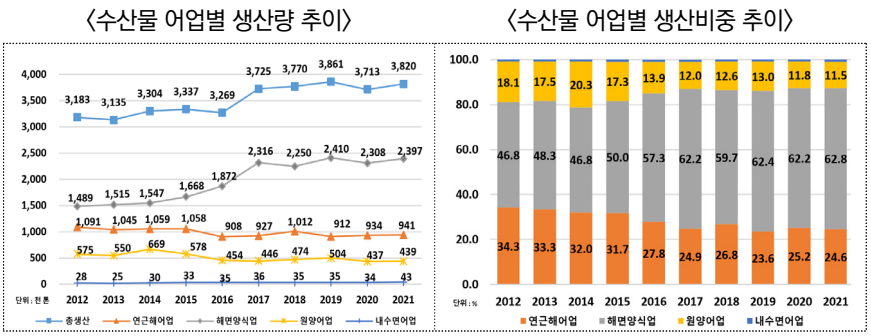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3.4.26)

천해양식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2.9%를 차지하나, 생산금액은 36.6%에 그치고 있다. 생산량의 경우 ('70) 11만 톤 → ('90) 77만 톤 → ('00) 65만 톤 → ('10) 136만 톤 → ('20) 231만 톤 → ('22) 227만 톤으로 양식기술의 발전과 어업인의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금액 역시 ('70) 106억 원 → ('90) 4,199억 원 → ('00) 6,839억 원 → ('10) 1조 8,156억 원 → ('20) 2조 8,952억 원 → ('22) 3조 3,8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5〉 참고).

2021년 기준 해면양식 총생산량 중 해조류의 생산량은 185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8%씩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그 비중은 2012년 대비 8.3%p 늘어난 77.0%로 가장 높았다. 패류는 총생산량의 17.9%를 차지해 해조류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반면 어류양식 생산량은 2021년 기준 8만 9,436톤이며, 3.7%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기타 수산 동물 1.0%, 갑각류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면양식 총생산금액은 약 3조 2,905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생산금액 기준으로는 어류 해면양식 생산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해면양식 총생산금액의 36.7%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해면양식 패류 생산금액은 약 1조 1,14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해조류는 약 7,604억 원을 생산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2-5〉 우리나라 천해양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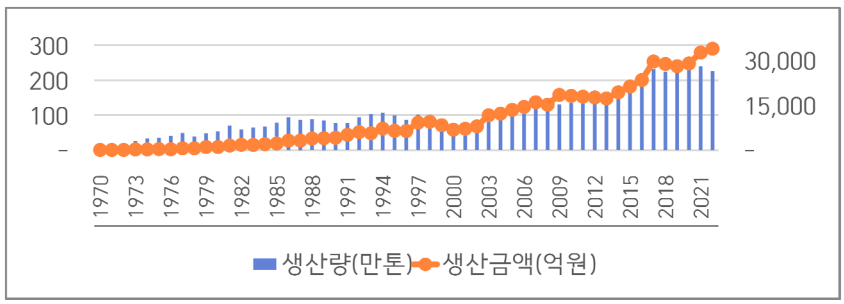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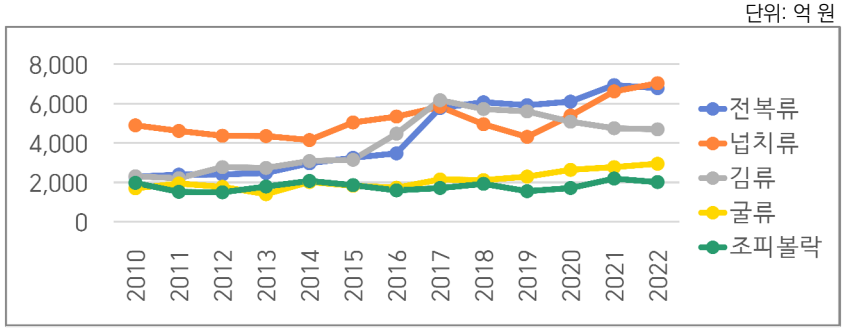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3.4.26.)

동물성 단백질 공급 기준으로 수산물 단백질인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등 수산부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생산량은 113만 톤('21년 기준)으로 생산량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동물성 단백질 공급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감률	
											’12~’21	’17~’21
수산물 합계	3,183	3,135	3,304	3,337	3,269	3,725	3,770	3,861	3,713	3,820	2.0	0.6
단백질 소계	2,151	1,995	2,207	2,125	1,874	1,955	2,048	2,010	1,944	1,966	-1.0	0.1
비중(%)	67.6	63.6	66.8	63.7	57.3	52.5	54.3	52.1	52.3	51.5	-	
비단백질 소계	1,032	1,140	1,097	1,213	1,395	1,770	1,722	1,851	1,769	1,854	6.7	1.2
비중(%)	32.4	36.4	33.2	36.3	42.7	47.5	45.7	47.9	47.7	48.5	-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단백질 공급 구분은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은 단백질로 구분, 해조류는 비단백질로 분류, 단 소금은 제외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3.4.26.)

한국인의 1인 1일당 공급단백질 섭취량은 2020년 기준 110.15g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 12.8g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년간 GDP증가, 축산물류 선호 우세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식탁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2-6〉를 살펴보면 동물성 단백질은 지난 10년간 15.6g 증가하였으나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2.73g 감소하였다. 수산물 중 어패류는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1.69g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패류는 꾸준히 20g에 달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필수 영양소 공급원이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6〉 1인 1일당 공급 단백질 '11~'20년

단위: g, %

구분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합계	축산물류	비중	어패류	비중
2011	47.78	30.43	63.7%	17.35	36.31%
2012	48.69	30.94	63.5%	17.75	36.46%
2013	50.86	32.77	64.4%	18.09	35.57%
2014	54.09	34.24	63.3%	19.85	36.70%
2015	55.43	37.39	67.5%	18.04	32.55%
2016	55.97	39.05	69.8%	16.92	30.23%
2017	63.29	40.90	64.6%	17.63	27.86%
2018	62.31	43.01	69.0%	19.30	30.97%
2019	64.85	45.33	69.9%	19.52	30.10%
2020	63.34	44.33	70.0%	19.04	30.0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수급표, 1인 1일당 공급단백질, 2011-2020 저자 재작성

2. 경영분석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양식어가수 1만 1,228호(8.6%↑)로 전체 어가수(4만 3,327호)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 양식어업 종사자는 32만 1천 명, 외국인 35만 8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식어가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에 있다. 감소하는 어업 종사자 수는 양식어가의 경영비용에서 그 이유 중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양식어업의 경영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6〉 양식어가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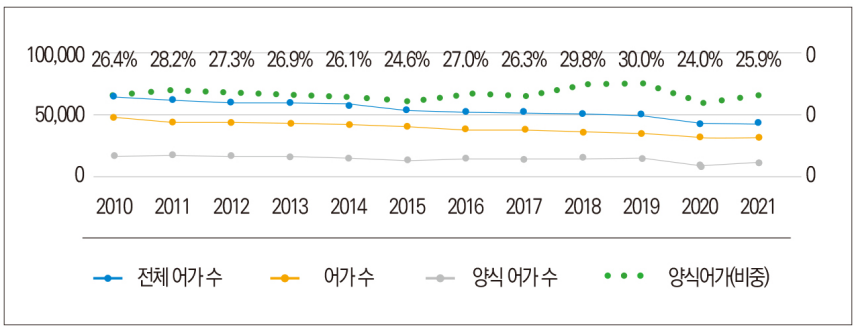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23.4.26.)

1) 양식어가 경영비용

(1) 업종별 소득현황

2021년 농업과 수산업의 소득 비교를 살펴보면 농어가 소득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것은 축산으로 9,2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은 양식어업 7,400만 원, 어로어업 4,500만 원, 논벼 3,70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순소득 역시 농어가 소득과 비례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7〉 참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농어업 경영비, 농어가 부채 항목이다. 농어업 경영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양식어업으로 1억 3,700만 원이며, 다음으로 축산이 1억 3,30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가 부채 역시 양식어업이 가장 많은 1억 2,700만 원, 다음으로 축산업 9,30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가격구조, 가격 변동성, 외부 환경적 리스크가 큰 생산구조 등에 기인한다.

이는 양식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해당 연도 수출입물량, 생산이슈, 기상환경, 물가, 소비지수 등), 자연재해 등(적조, 태

풍, 빈산소수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험으로 적용받는 비중은 30%에 그친 데 따른(2019년 보험료 인상과 보상범위 축소에 따른 탈퇴) 경영비용 증가 등의 많은 복합적인 영향으로 부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농업의 경우 국가가 수매지원을 해주는 품목도 존재하지만(일부 수산물 대중어도 포함), 양식생산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판매는 전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표 2-7〉 2021년 농업과 수산업 소득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농어가 소득	농어가 순소득	농어업 소득	농어업 경영비	농어업 외소득	농어업 총수입	농어가 부채
농업	축산	91,838	72,721	65,146	132,864	7,576	198,010	93,123
	논벼	36,532	17,360	12,338	17,335	5,022	29,693	12,261
수산업	어로	44,747	26,690	11,913	29,598	14,777	41,511	42,700
	양식	74,331	54,933	41,953	137,162	12,981	179,114	126,657

자료: 통계청(2021)

다음 〈표 2-8〉의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통계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부 업종별 소득은 '21년 기준 축산농가가 6,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식어가 4,200만 원, 화훼 3,2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소득은 특용작물 580만 원, 밭작물 690만 원의 순이었다.

업종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화훼농가가 '17년 대비 24.5%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논벼 6.5%, 축산농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어업의 경우 어로어업은 5.2%↓, 양식어업은 6.1%↓로 역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농업은 모든 품목에서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어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연도별 어업 및 농축산소득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어가평균	26,692	25,670	20,672	22,716	19,676	-5.9%
어로	15,564	14,162	13,708	12,596	11,913	-5.2%
양식	57,463	57,032	38,987	55,997	41,953	-6.1%
농가평균	10,047	12,920	10,261	11,820	12,961	5.2%
논벼	8,987	13,554	10,032	10,933	12,338	6.5%
과수	16,793	21,072	14,485	18,005	20,843	4.4%
채소	12,881	13,984	11,508	12,712	14,632	2.6%
특용작물	5,704	8,012	4,737	9,821	5,795	0.3%
화훼	10,697	14,026	15,962	16,270	32,031	24.5%
밭작물	6,645	12,135	7,380	2,743	6,921	0.8%
축산농가	51,289	59,697	50,558	55,002	65,146	4.9%

자료: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2) 업종별 부채 현황

’21년을 기준으로 업종별 가장 높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양식어업으로 나타났다. 양식어업은 다음 〈표 2-9〉의 부채 현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년을 기준으로 매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7년 8천만 원에서 ’21년 1억 2,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와 높은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산업으로 분류하여 농·어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어가 평균의 경우 ’17년 4,245만 원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어 ’21년에는 평균 6,400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5년간 증감률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평균의 경우 어업에 비해 낮은 6.8%의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증감률은 특용작물로 14.7%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 10.7%, 밭작물 8.6%, 축산 7.5%로 평균 6.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논벼, 과수는 부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2-9〉 연도별 어업 및 농축산업의 부채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감률
어가평균	42,452	61,004	63,493	63,903	64,397	8.7%
어로	28,837	42,865	44,089	43,454	42,700	8.2%
양식	80,089	110,441	114,529	131,155	126,657	9.6%
농가평균	26,375	33,269	35,718	37,589	36,592	6.8%
논벼	17,352	15,838	15,168	17,129	12,261	-6.7%
과수	28,852	26,377	24,533	26,615	27,529	-0.9%
채소	18,924	24,591	24,965	30,911	31,441	10.7%
특용작물	9,784	19,956	12,513	25,664	19,382	14.7%
화훼	55,340	62,999	53,161	79,066	67,074	3.9%
밭작물	13,679	12,207	13,600	10,409	20,697	8.6%
축산	64,934	103,041	109,289	119,427	93,123	7.5%

자료: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3) 경영비용

'20년 수협중앙회 양식어업경영 사전조사에 따르면 '20년 양식경영비는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농업(2,400만 원)보다 5.8배, 어로어업(2,700만 원)보다 5.2배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20년 양식경영비는 32.4%(1억 621만 8천 원 → 1억 4069만 7천 원) 증가했으며, 양식어가의 평균 경영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특정 양식품목(넙치)의 경우는 실제 경영비 평균치(3억 5천만 원)보다 2.4배(8억 5천만 원) 높게 지출되고 있다.

〈표 2-10〉 2019년 기준 양식 대표품목 생산경영비

단위: 만 원

구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양식	평균
		넙치 (육상수조)	김 (부류/지주)	전복 (해상가두리)	멍게 (연승)	
경영비총계		84,813	33,447	15,468	6,929	35,164
어업경영비용		82,613 (100.0%)	32,761 (100.0%)	14,885 (100.0%)	6,091 (100.0%)	34,088
	인건비	9,272 (10.9%)	10,011 (29.9%)	4,031 (26.1%)	2,900 (41.9%)	-
	사료비	35,750 (42.2%)	-	-	-	-
	종자비	-	-	4,163 (26.9%)	2,060 (29.7%)	-
	수도광열비	16,165 (19.1%)	-	-	-	-
	초기시설비	-	8,259 (24.7%)	-	-	-
어업외비용(금융비용)		2,200	86	583	838	927

자료: '20년 수협중앙회 양식어업경영 사전조사 내부자료

2) 양식어가와 농가 비교분석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대표적 품목을 대상으로 통계를 활용하여 지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축산의 대표품목은 소, 돼지, 닭의 세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산의 경우 12개 대표 양식품목을 분석하였다. 어종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숭어 네 품목, 양식 패류 및 기타에서는 전복, 바지락, 피조개, 미더덕 네 품목, 해조류는 김, 미역, 톳, 파래 네 품목을 분석하였다.

축산과 수산 모두 2022년 생산금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어가수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농어가당 평균 수입

을 단순 산식(전체 생산금액/사육(양식) 농어가)을 활용하였으며, 농어가 평균수입/12(월)를 월가구 수입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였다.[7)]

품목별 비과세 기준 혜택 범위의 경우 품목별 농가수취평균가격에 대상 품목의 비과세 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소의 경우 2억 9,30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마리당 농가수취평균가격 5,870,000원×비과세 두수 50마리로 산출된 결과이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차별 없이 3천만 원으로 일괄 기입하였다. 나머지 부채, 소득률, 농어가 소득금액은 농림어업총조사의 21년도 통계만을 비교하였다.

'22년 기준 전체 생산금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축산의 '돼지'로 8조 5천억 원의 생산금액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은 '소'로 6조 9천억 원, 닭이 2조 3천억 원으로 상위에 포진한 반면, 수산은 넙치 7천억 원, 전복 6,800억 원, 김 4,700억 원 등의 생산금액을 기록하였다.

사육/양식 농어가 수에서도 가장 많은 농어가수는 소(8만 7,784가구), 돼지(5,696가구)가 가장 많은 농가 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식어가의 전복이 2,836어가, 미역 2,673어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군 중 가장 높은 월가구 수입은 축산의 돼지가 1억 2,304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넙치 1억 1,963만 2천 원, 숭어 9,316만 3천 원, 닭 6,807만 7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품목은 사육두수 700마리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돼지로 3억 1,300만 원 정도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소가 2억 9,300만 원, 닭이 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닭

7) 제시한 산출방법의 결과가 바이어스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윗값과도 거리가 있겠으나, 축산과 수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단순비교 및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함

의 경우 1만 5,000마리가 비과세 혜택 두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수취가격이 낮아 5천만 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와 돼지에 비해 10년째 1만 5,000마리로 비과세 범위가 확장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양식어업은 3천만 원으로 품목 차등 없이 설정되어 있다.

부채는 축산농가 평균이 9,300만 원, 양식어가 평균은 1억 2,700만 원 수준으로 축산농가 대비 27%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률(경영비 등 일체 운영비용 제외한 순소득률)은 축산농가 32.9%, 양식어가 23.4%로 축산농가 대비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농어가 소득금액은 축산농가 6,500만 원, 양식어가 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11〉 축산 농가와 양식어가의 각종 지표 비교

구분	축산			수산			
				어류			
	소	돼지	닭	넙치	조피볼락	참돔	숭어
'22년 전체생산금액 (백만 원)	6,899,000	8,478,500	2,274,300	703,438	201,103	102,327	93,909
사육/양식어가 (가구)	87,784	5,696	2,784	490	607	288	84
가구당 평균 생산금액 (백만 원)	79	1,489	817	1,436	331	355	1,118
월가구 수입 평균금액 (천 원)	6,549	124,042	68,077	119,632	27,609	29,608	93,163
각 품목별 비과세기준 혜택 금액(백만 원)	293	313	49	30			
부채(천 원)	93,123			126,657			
소득율	32.9%			23.4%			
농어가 소득금액 (원, 통계청 '21년 기준)	65,146,000			41,953,000			

구분	수산							
	패류 및 기타				해조류			
	전복	바지락	피조개	미더덕	김	미역	톳	파래
'22년 전체생산금액 (백만 원)	678,606	64,102	3,502	2,916	469,477	117,732	6,950	5,157
사육/양식어가 (가구)	2,836	953	194	156	1,873	2,673	252	91
가구당 평균 생산금액 (백만 원)	239	67	18	19	251	44	28	57
월가구 수입 평균금액 (천 원)	19,940	5.583	1.500	1.583	20,888	3,670	2.333	4.750
각 품목별 비과세기준 혜택 금액(백만 원)	30							
부채(천 원)	126,657							
소득율	23.4%							
농어가 소득금액 (원, 통계청 '21년 기준)	41,953,000							

주: 통계청 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의 사육두수는 모돈 제외 수,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는 육계 기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검색일: 2023.4.27.);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어가수(검색일: 2023.4.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검색일: 2023.4.27.); 통계청,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검색일: 2023.4.27.); 한국육계협회(검색일: 2023.4.27.);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양식품종별 어가 및 양식장 면적(검색일: 2023.4.27.);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22년 품목별 추정치(검색일: 2023.4.27.)

제3절 양식어가 실태 및 문제점

오늘날 국내 양식산업의 물리적 환경은 스마트화, AI도입과 양식 품종의 개량에 따른 소득 개선의 희망 등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발전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외적인 리스크(전쟁, 분쟁, 질병 등)에 따른 물가상승(스태그, 에그플레이션 등), 소비위축 등으로 생산자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어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신규 인력 미유입 현상으로 인해 수산업의 종사자는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양식어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적 구조적 현상들로 인해 양식어업은 인력부족, 종사인력 고령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을 가중시켜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어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크게 인력과 경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8〉 국내 양식산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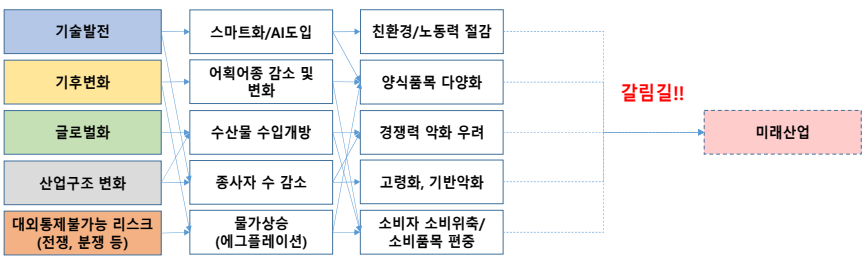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 인력

어업가구와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업경영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어촌경제활동의 생산성 저하 및 어촌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특성상 노동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양식어가들이 재래식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력 수급을 외국 노동력이 메우고 있다. 양식어업은 고령화와 신규 유입 인력이 없어 일손 부족 등의 노동력 문제로 양식장의 휴업과 폐업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어가 및 어가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어가(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합한 수치)의 경우 '10년 대비 '22년의 가구수가 약 2만 3천 가구가 줄었으며(연평균 ↓3.57%), 인구수는 절반에 가까운 8만 명 감소(연평균 ↓5.15%)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어업은 이러한 어가 및 인구감소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어가의 감소폭(↓3.62%)은 어로어업(↓3.5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는 어로어업(↓5.34%)의 감소폭에 비해 낮은 연평균 4.6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가와 인구수의 이탈 및 감소현상은 고령화에 따른 자연 인구 소멸, 유입인구 부족과 함께 어업을 통한 생활의 유지가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양식어가의 경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속화되어 폐업하는 어가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어가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표 2-12〉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가구, 명, %

구분		'10년	'16년	'18년	'20년	'22년	증감률 ('10~'22)
계	가구수	65,775	53,221	51,494	43,149	42,536	△3.57%
	인구수	171,191	125,660	116,883	97,062	90,805	△5.15%
어로어업	가구수	48,389	38,873	36,171	32,814	31,362	△3.55%
	인구수	125,548	90,500	80,928	71,857	64,975	△5.34%
양식어업	가구수	17,386	14,347	15,323	10,335	11,174	△3.62%
	인구수	45,643	35,160	35,955	25,205	25,829	△4.63%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3.4.23.)

앞선 어가 및 어가인구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인구 감소는 물론 어가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2-13〉의 통계청 연령별 어가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촌의 70대 이상은 27.7%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3〉 연령별 어가인구(2021-2022년)

단위: 천 명, %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1		93.8 (100.0)	9.5 (10.1)	4.6 (4.9)	7.9 (8.4)	17.0 (18.1)	30.8 (32.8)	24.1 (25.6)
	남자	47.1 (100.0)	4.9 (10.4)	2.4 (5.2)	4.7 (9.9)	8.0 (17.0)	14.9 (31.6)	12.2 (25.9)
	여자	46.7 (100.0)	4.6 (9.8)	2.2 (4.6)	3.3 (7.0)	9.0 (19.2)	15.9 (34.0)	11.9 (25.4)
2022		90.8 (100.0)	8.4 (9.3)	3.7 (4.0)	7.5 (8.3)	14.8 (16.3)	31.3 (34.5)	25.1 (27.7)
	남자	45.6 (100.0)	4.7 (10.3)	2.0 (4.3)	4.3 (9.5)	7.2 (15.8)	14.6 (32.0)	12.8 (28.1)
	여자	45.2 (100.0)	3.7 (8.2)	1.7 (3.8)	3.2 (7.1)	7.6 (16.7)	16.7 (37.0)	12.3 (27.2)
증감		-3.0	-1.1	-1.0	-0.4	-2.2	0.6	1.1
증감률		-3.2	-11.4	-20.7	-4.8	-13.0	1.8	4.4

자료: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검색일: 2023.4.25.)

또한 〈표 2-14〉의 귀어현황을 살펴보면 양식어업에는 인구 유입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년 귀어인 수 986명 중 어로어업 귀어 비중은 91.8%인데 반해 양식어업 귀어 비중은 8.2%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귀어인의 증가는 주로 어로어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식어업의 귀어 연도별 증감률은 ↓14.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 자릿수(9명)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어업 종사자의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노동강도, 어선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어로작업의 고위험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4D업종(힘들고(difficult),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원거리(distant)) 종사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8)]

〈표 2-14〉 귀어현황

단위: 명, %

구분			’18년	’20년	’22년	증감률 (’18~’22)
총 계(비중)			986(100.0)	967(100.0)	1,023(100.0)	0.9%
어로어업 (비중)		해수면	884(89.7)	881(91.1)	946(92.5)	1.7%
		내수면	21(2.1)	30(3.1)	28(2.7)	7.5%
양식어업 (비중)		해수면	75(7.6)	44(4.6)	40(3.9)	-14.5%
		내수면	6(0.6)	12(1.2)	9(0.9)	10.7%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3.4.25.)

2) 사료가격

최근 양식어업의 경영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이 국제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내수면 어종의 배합사료는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곡물가격(밀) 폭등에 따른 문제로 밀을 많이 포함하는 내수면 어종의 배합사료가 급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면 어종(송어, 메기, 향어)의 사료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고, 결과적으로 메기 어종의 경우 2022년 대비 43% 인상됐다.

이와 같은 사료값의 증가세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두박 가격 상승, 어분 산지(칠레, 페루 등) 어획문제와 더불어 물류비용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식사료의 가격 상승은 양식어가들은 양식 경영비용 중 사료 값의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실질적 어가(출하가격)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기 힘들다. 또한 어가들 대부분이 외상(채권)으로 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경영비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8) 자료: 어업인 수산(검색일: 2023.8.1.)

〈표 2-15〉 연도별 어종별 배합사료 가격 변화

단위: 원/kg

어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증가율
넙치	2,700	2,700	2,700	2,700	2,900	3,125	7.8
우럭	2,125	2,125	2,125	2,125	2,225	2,475	11.2
돔	1,750	1,750	1,750	1,750	1,950	2,150	10.3
숭어	1,525	1,525	1,525	1,525	1,725	1,925	11.6
송어	2,350	2,350	2,150	2,150	2,350	2,600	10.6
메기	1,277	1,277	1,277	1,277	1,451	2,075	43.0
향어	1,151	1,151	1,151	1,151	1,477	1,825	23.6

자료: 사료가격 변화(수협사료 내부자료)

3) 전기료

현재 양식어가는 각종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실적은 지속적인 악화 우려에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은 양식어업계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률이 '22년 1월 대비 47.1%에 달해 일반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인상률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9] 전기세의 인상은 양식업이 농사용(갑) 전기료를 적용 받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나 현재 농사용(갑)이 아닌 농사용(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9) 자료: 한국수산경제(2022.11.30)(검색일 2023.6.4.)

〈표 2-16〉 전력 요금 인상자료

구분	전력량 요금(원/kWh)			’22.1. 대비 인상액(인상률)
	’22.1.	’22.12.	’23.1.	
농사용(갑)	16.6	28.9	32.7	16.1(97.0%)
농사용(을)	34.2	46.5	50.3	16.1(47.1%)
산업용(갑)	60.9	73.2	84.6	23.7(38.9%)
일반용(갑)	66.9	`79.2	90.6	23.7(35.4%)

* 농사용(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농사용(을): 수산물양식어업,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및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
산업용(갑):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에 적용
일반용(갑):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미만에 적용
자료: 한국전력

양식어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양식 수산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장의 발전기나 펌프, 산소공급장치, 냉동창고 등 모든 설비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24시간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양식어업의 경영비 중 전체 생산비용의 30%를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료의 상승은 양식장 뿐만 아니라 양식 사료공장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사료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 요인이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전기요금 인상은 경영 악화나 도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료 상승의 경영비 부담 증가는 양식수산물의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인력,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는 양식어가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생산자 측면에서 전기료 상승분을 판매가격으로 전가한다면 수입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반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양식 생산량을 줄일 경우 채산성 악화로 인해 경영악화를 야기해 도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03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분석

제1절 해외 제도 분석

본 절에서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주변국과 주요 양식국의 양식어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생산물 생산의 주체를 어가로 지칭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경우 기업, 법인으로 지칭하고 있어 대상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의 경우 법인세가 조세의 기본이지만 이를 포함하여 국외사례의 양식어업 법인세 혜택을 포함한 양식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외 사례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와 더불어 주요 양식국인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KPMG사의 자료를 번역, 검토하여 비교 및 요약하여 작성하였다.[10)]

10) KPMG(2021, 2022)

1. 중국

1) 법인세

기업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이하 CIT)는 중국 기업의 주요 세금 중 하나로 중국의 표준 CIT 비율은 25% 정도이다. 중국에 진출한 양식기업은 사정에 따라 CIT 면제 혜택을 받거나, 소득의 50%가 CIT 대상인 특수양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CIT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양식어업과 더불어 수산물 1차가공업도 CIT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수산물의 1차 가공이란 내장제거, 비늘제거, 뼈 제거, 절단, 냉각, 동결, 냉장, 신선 유지, 방청 처리, 포장 및 기타 수생 동물의 간단한 가공을 의미한다. 다만, 익힌 수산물과 각종 수산물의 통조림 식품, 조미·구이 수산물 등은 '고차가공' 대상 수산물로 간주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CIT 면제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중국 법인의 양식 회사는 과세 소득의 50%에만 CIT를 부과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유효 세율은 12.5%로, 해면과 내수면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양식기업의 법인세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기업의 범위는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인민폐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인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자산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비제한적이고 비금지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저소득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 금액 중 일부는 과세 소득 금액의 25%의 경감된 세금 기준으로 20% 세율로 CI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는 기업 소득의 5%에 달하는 실효 세율을 의미한다. 연간 과세 소득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20% 세율로 CIT의 적용 받는다.

2) 부가가치세

① 시나리오 I: 부가가치세 면제

자체 생산 양식 제품(양식 생산자가 판매하는 수산종)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식물"이란 지느러미고기, 조개류, 수생식물 등 수생종의 인공어획, 사육, 사육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리·통조림·구이 수산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시나리오 II: VATable

VAT(Value Added Tax, 이하 VAT)는 양식 제품이 자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식어업체가 다른 단위/개인(현지 또는 국외 단위/개인 모두)에게 수산종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거나, 구입한 수산종을 추가 가공에 사용하여 완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차 수산물의 재판매 및 1차 가공 수산물의 판매는 9%의 비율(2019년 4월 1일 이전에는 10%)의 산출부가세가 부과된다.

양식회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투입부가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서, 관세수입부가세 특별지급증명서, 판매부가세 또는 농산물의 매입청구서 등으로 각각의 부가세율로 산출부가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거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납부 영수증 또는 여객 운송 서비스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서류. 수산물의 심층 가공에 종사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증빙이 가능하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양식 회사가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 수산종 판매는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없는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연간 매출액이 5백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또한 월 매출이 1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시나리오 III: 수산물 수출

양식어업 생산자가 수출하는 자체 생산 수산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양식어업 생산자가 수출하는 그밖의 제품은부가가치세 '0 등급'으로 분류된다.

3) 기타 조세

① 토지사용세

양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 사용세가 면제된다. 단, 수산양식물의 가공 및 생활공간 또는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역별 할증료

양식어업체들도 업체 소재지에 따라 7%, 5% 또는 1%의 도시건설세, 3%의 교육할증료, 2%의 지역교육할증료 등 부가가치세 부담 외에 지역할증료를 내야한다.

③ 조세특례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식어업체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중국에서 CIT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일본

1) 법인세

일본의 세금은 국가 정부와 지방 당국이 부과한다. 양식회사를 포함한 기업에는 법인세(국민소득세), 사업세(지방세), 도도부현 및 시 주민세(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지방회사)가 부과된다. 도쿄의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유효 법정 세율은 30.62%이다.

(1) 세제 혜택 세액 공제 및 연구 개발(R&D) 비용

2019년 세제 개혁에 따라 R&D 세제 혜택이 개정되어 ① 세액 공제 비율이 10%에서 14%로 증가하고(21년 3월 31일까지), ② 적격 벤처 기업의 세액 공제 한도가 10%에서 40%로 증가했다. 그리고 ③ B2B 아웃소싱 R&D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방형 혁신 R&D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구 개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투자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0년 세제개혁법에 따라 투자 문턱을 10%에서 30%로 증가시켰다. 최대 금액은 회계 연도의 법인세 부담액의 25%로, 기업이 특정 벤처 R&D 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면 회계연도 법인세 부담액의 최대 40%까지 신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증가했다.

(2)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세특례조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해당 도도부현 및 자치단체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7년 7월 31일 제정되었다. 사업 계획은 현의 승인과 관할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세금 및 재정적 인센티브[11]는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

총 취득 비용은 최대 80억 엔까지 해당 도도부현 및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세액 공제는 ① 과세 소득의 20% 또는 ② 해당 기간의 소득세로 제한된다.

(3) 혁신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체계 구축

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개방형 혁신세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특정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적격주식은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 세금 계정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투자 법인(즉, 법인 주주)은 취득 비용의 최대 25%까지 특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당기 과세 소득으로 제한됨).

이 세제 혜택에 따른 소득 공제는 투자당 25억 엔, 회계 연도당 총 125억 엔으로 제한되며, 투자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금 변동이 발생하면 공제액을 환수한다.

개방형 혁신세 인센티브는 일본 벤처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벤처기업에도 적용되며, 투자금액은 일본 벤처기업 1억 엔(또는 중소기업 1천만 엔), 외국계 벤처기업 5억 엔부터 적용된다.

2) 지역사업시설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

양식기업이 아래에 요약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사업 시설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지역에 지사 및 연구소 등 본사

11) a. 기계, 기구 및 비품: 특별감가상각 40%, 세액공제 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감가상각 50%, 세액공제 5%)
b. 특정업무시설의 건축물, 부속시설 및 구조물: 특별감가상각 20%, 세액공제 2%.

기능을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제공되며, 인센티브는 외국인 직접 투자 또는 외국 기업의 자회사에도 제공된다.

(1) 고용촉진세제 지원 및 자본투자세 인하

지역활성화지역 내에 설치 또는 확장본부 기능을 하는 경우(대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다)는 최대 60만 엔의 세액 공제(신입사원 1인당)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자본 투자세에 대한 지원은 특정업무시설의 건물, 부속시설 및 구조물(본사기능) 취득가격(2천만 엔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엔 이상) 과세조치에 대해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15% 또는 4%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양식기업이 도쿄 23구부터 지역 활성화 지역 내 본부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 신입사원 1인당 최대 90만 엔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자본투자세도 감면하고 있다.

(2)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불균등과세

인증기업은 일본의 법인세, 재산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당국이 모두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특정 장비 투자'에 대한 기타 특별 세금 조치

법에 명시된 특정 고정 자산과 관련하여 '블루 폼' 세금 신고를 하는 회사는 첫해 증가된 감가상각 또는 가속된 감가상각을 통해 특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또한 도도부현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가 있다.

3. 러시아

1) 법인세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표준세율 20%로 일반규칙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연방 세법에는 생산 및 가공농산물(어류 및 그 밖의 수산생물자원의 재배로 얻은 생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있고, 구체적인 유형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어류 및 그 밖의 수산생물자원의 재배에 종사하는 단체는 농산물 생산자로 간주되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수입분에 1차 가공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농업 원료의 자체 생산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그러한 조직의 상품(작업, 서비스) 판매로 인한 총 수입의 70% 이상에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러시아에서 상품(노동, 서비스)의 판매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식 기업이나 단체는 특정 품목(조제 수산물)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어류(Live fish)와 수산물(냉장 생선, 냉동 생선 및 기타 가공 제품 포함)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들은 수산물을 포함한 상품을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도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자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인 통합 농업세(UAT: Unified Agricultural Tax, 이하 UAT)를 적용할 수 있다. 이 특별조세제도는 "비용만큼 감소된 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6%의 세액으로 조세를 납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법인의 경우 CIT, 법인세(자체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판매 및 농산물 생산자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재산과 관련)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 개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연방의 지역 당국은 모든 또는 특정 범주의 납세자에 대해 UAT를 최대 0%까지 낮출 수 있다. 기타 세금, 부담금 및 사회적 지불금은 러시아 조세법에 따라 UAT를 적용하는 단체가 지불한다.

어류 및 그 밖의 수산생물자원의 재배에 관여하는 농산물 생산자는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수입분 중 그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 원료를 생산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함하여 그 수입 분이 UAT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농업 생산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판매로 인한 총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역세

러시아 연방에서는 수역 사용에 대한 세금인 수역세가 있다. 그러나 단체들이 수역에서 물을 회수하고 어업과 수역 생물 자원 대체를 위해 수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역세를 면제해준다.

4. 노르웨이

1) 법인세

노르웨이의 양식 회사는 현재 22%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소 간소화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타 기업에도 적용되는 통상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소득연도 중 바이오매스 증가(성장)는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다. 또한 취득한 어류 또는 기타 수생생물의 원가는 비용이 발생할 때 직접 공제될 수 있으며, 또는 납세자가 매입가격을 자본화하는 것을 선택하여 어류를 판매할 때 세금 목적을 위한 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식 면허는 전형적으로 양식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대부분의 양식 면허는 상업적 면허라고 하며, 무한정 기간 허가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 자산 매각을 통한 양식 면허 이전으로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양도에 대한 원가는 양도차익(손실)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2) 지방세

양식어업은 법인소득세 외에도 사유재산세(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유식 생산 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세율은 재산세 기준의 0.2%에서 0.7%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양식 어류의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3) 수산물 수출에 대한 시장 의무 및 연구 의무

수출에는 시장 수수료와 연구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수출된 제품의 FOB 가치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수수료는 종류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며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가격의 0.3%에서 1.05%까지 차이가 있다. 연어와 송어의 경우 수수료는 0.6%(시장 수수료 0.3%, 연구비 0.3%)이다. 수수료는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와 어업 및 양식 산업 연구 기금의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제2절 국내사례 검토

1. 농수산업 비과세 제도

조세특례[12]란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통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조세 입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조세 공평”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이러한 가치가 공헌할 수 있는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특례는 조세 공평의 이념을 저해할 수 있고, 국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므로 법의 적용 및 해석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13]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업 분야에 관한 조세특례는 최상

1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법률 제19328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6.12 시행)

13)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위법령인 대한민국헌법[14]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에서는 농업과 어업에 대한 보호·육성 및 개발·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농·어민의 이익 보호 등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면서 조세특례를 포함한 농수산업 분야의 국가적차원의 지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는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출"로 칭하는데,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시장실패의 교정,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 중·장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제공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15] 조세지출[16]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상 비과세·감면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서 농·수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곡물 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농·수산업은 시장실패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조세지출의 정책적 목적을 시장실패의 교정,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판례집 13-2, 819, 824 등 참조).

14)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중략)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5) 국회예산정책처(2016.11.)(검색일: 2023.6.12.)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3.6.12.)

그러나 농·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예산분류 기준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농림수산 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수산업 지원 및 부흥에 대한 헌법상의 국가적 의무, 식량자원으로써의 국가적 가치, 식량안보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2021년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예산분류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8,640	5.78	32,104	5.96	39,288	6.91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통일	12	0.00	13	0.00	12	0.00
4	국방	320	0.06	351	0.06	359	0.06
5	교육	13,946	2.81	13,557	2.52	13,818	2.43
6	문화 및 관광	383	0.08	637	0.12	633	0.11
7	환경	12,549	2.53	13,666	2.54	13,357	2.35
8	사회복지	173,892	35.08	189,209	35.11	191,687	33.73
9	보건	67,752	13.67	75,858	14.07	77,092	13.57
10	농림수산	57,156	11.53	59,424	11.03	60,117	10.58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026	25.02	136,561	25.34	153,871	27.08
12	교통 및 물류	5,223	1.06	5,342	0.99	5,630	0.99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770	2.37	12,077	2.24	12,304	2.17
15	과학기술	31	0.01	106	0.02	109	0.02
16	예비비	-	-	-	-	-	-
합 계		495,700	100.00	538,905	100.00	568,277	100.00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3.6.12.)

2. 업종별 비과세 연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광업 등을 포함함에 따라 업종별 비과세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농업소득 비과세 연혁

먼저 농업소득의 비과세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1962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세가 신설되면서 농지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이후 40년이 지난 200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농지세를 대체하는 농업소득세가 도입되어 2001년 발생소득부터 과세하였으나 작물재배업의 소득세인 농업소득세는 2010년 폐지되었다〈표 3-1〉 참고).

〈표 3-1〉 농업소득 비과세 연혁

구분	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1	’62.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 신설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2	’01. 1. 1.	지방세법 개정	농지세를 폐지하고 농업소득세를 신설
3	’05. 1. 5	지방세법(부칙 제5조, 법률 제7332호)을 개정	농업소득세를 한시적(5년간) 과세중단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해소)
4	’10. 1. 1.	농업소득세 폐지 (지방세법)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 폐지
5	’13. 8. 8.	정부세제개편안 발표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6	’14. 1.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전환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시 과세전환 (시행일: ’15. 1. 1.)

자료: 저자 작성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국세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작물재배업이 제외되었고, 지방세법에서 농지세를 대체하

는 지방세로 농업소득세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농가로 분류되면서 전체 농가의 1~2%만이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액도 미미하여 행정력 낭비 초래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5년간 납부유예가 이루어졌다. 이후 납부유예 기간이 끝나자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2010년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게 되었다.[17)]

이후 2013년 정부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4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로 전환되었다. 농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제1호에 따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경우에도 소득액의 한도를 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바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연 10억 원 이하인 작물재배업소득(대상 작물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제12조제2호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 원 이하인 농어가부업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2) 축산업 소득비과세 연혁

축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래전부터 농가에 제공되었던 소득세법의 감면혜택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17) 김미복·김수석(2011), p.25.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어가뿐만 아니라 전업 또는 기업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축산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농·어업인이 주업인 농업 외에 부업으로 가축 사육을 영위할 때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농업 이외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부업축산 규모란 가축 종류별로 일정 마릿수 이하로 기르는 경우를 말한다.

축산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축종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전액 비과세와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로 구분되는데, 소 사육업의 경우 50마리 이하는 소득액의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는 연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비과세이다. 이는 1976년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축산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이다(〈표 3-2〉 참고).

〈표 3-2〉 축산업 소득 비과세 연혁

구분	일자	개정 및 개정사유
1	’49. 7.	소득세법 제정시 축산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소법§10)
2	’69. 1.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년간 소득세 감면(소법§8의2) - 감면범위: 사업개시연도와 익년부터 6년간 전액, 이후 3년간 1/2 감면
3	’77. 1.	축산업에 대하여 중요산업으로 보아 감면제도 신설(소법§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신설(소령§6의2) ⇒ 연 108만 원 - 비과세범위: 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 (젖소 7마리, 소 10마리, 돼지 50마리, 양 100마리, 닭 1,000마리)
		[일부개정] 중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4	’78~’1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로 해당되어 6차례 범위 확대

자료: 저자 작성

3) 어업소득 비과세 연혁

어업소득 중 어로어업(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등 잡는 어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어업소득 중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2호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의 하나로서 다른 부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였다. 하지만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동일한 1차 산업인 농업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어로어업만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변경하였다.

〈표 3-3〉 어업소득 비과세 연혁

구분	일자	개정 및 개정사유
1	’49. 7.	소득세법 제정 시 수산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소법§10)
2	’77.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신설(소령§6의2) ⇒ 연 108만 원 - 농가부업범위: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3	’78~’19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로 해당되어 11차례 범위 확대
4	’20. 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법§12) - 비과세 범위: 농어가부업소득 3천만 원 ⇒ 어로어업소득 5천만 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 원 유지
		◇ 개정 이유 중 일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 ◇ 주요 내용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자료: 저자 작성

4) 농가부업소득

1977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신설되었다. 이때 양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양어는 약 28년 동안 농가부업소득의 일부분으로서 통으로 비과세가 확대되었다. 총 11번의 확대가 있었으며, 대략 1,650만 원이 확대되었다(〈표 3-4〉 참고).

반면 축산의 경우 처음부터 품목별로 나누어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확대시기를 살펴보면서 국가적 상황과 정책, 시기적인 상황과 맞물린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이전은 국가 내부 이슈들로 인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08년 이후는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피해대책으로 인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양어에서 어로가 추가되었고, 2020년에는 어로는 주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비과세 범위 5천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2016년에 1천만 원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3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의 범위 확대는 추가적으로 과연 소 20마리, 돼지 200마리가 얼마만큼의 혜택인지 계산을 해보겠지만, 이제부터는 대외적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유지, 인구유입 등의 미래 지향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입법 및 개정 사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1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최근까지도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나 업종별 과세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농가부업소득 수·축산업 관련 비과세 주요 변경사항

수산	구분	축산(마리)					정부	근거 및 당시 상황
		젖소	소	돼지	양	닭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신설, 범위: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1977년							
범위확대(8회), 108 → 186 → …… → 1,200 → 1,800	1980년 1월	10	20	100	100	1,000	전두환	국가계엄상태, 농민민심안정정책
	1983년 1월	20	30	150	150	3,000	전두환	조미수호통상 100주년
	1986년 6월	20	30	200	300	10,000	전두환	아시안게임, 정부개각, 각계 시국성명발표
	1996년 1월	30	30	200	300	10,000	김영삼	문민정부, 도농통합시 출범, WTO원년(비준서제출)
	2008년 2월	30	30	500	300	15,000	노무현	정권교체('08.2), 한미FTA협상 및 타결('07.4), 한-EUFTA협상
범위확대1800만 원→2천만 원 부업범위 양어→어로, 양어	2012년 2월	50	50	700	300	15,000	이명박	한미FTA 발효
농가부업범위확대: 2천만 원→3천만 원	2016년 2월	농가부업범위확대: 2천만 원→3천만 원						
어로어업소득 농가부업 제외, 주업인정, 비과세범위5천만 원 확대, 양식어업: 현행과 동일 (부업소득, 3천만 원 비과세)	2020년 2월	-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연도별 개정안(검색일: 2023.5.1.), Wikidipia 연도별 뉴스 참고 저자 작성

3. 농어업간 세제 비교

농어업 간 세제비교를 통해서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몇몇 부분에서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면세유가 대표적이며, 지금까지 법인세 역시 불공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토지양도소득세, 재산증여세, 부동산취득세의 세 가지는 농어업 간 불공평 세제를 해소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표 3-5〉 참고).

토지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9조 3항을 신설(2017.12.29.)하면서 농업과 어업의 과세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였으나, 일몰제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산증여세 역시 어업용 재산(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 등)에 관해서는 2017년 이전까지 과세하였으나, 조특법 제71조 제1항의 목을 개정하면서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취득세도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12조를 개정하면서 농업과 동등하게 경감률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불평등 세제는 대표적으로 어업법인의 법인세와 면세유로, 농업과의 세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업에서 얻는 소득(농업소득) 전액은 조특법 제66조, 제68조에 의거해 전액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과 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세제감면이 되지 않아 과세 역차별 사례라 할 수 있다.[18]

두 번째는 면세유 공급대상이다.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

18) 현대해양(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1)(검색일: 2023.4.30.)

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굴삭기(1톤 미만)는 2012년 3월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의 어업용 굴삭기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차별이 분명 존재한다.[19]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토지양도소득세의 법의 개정 개요에서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특법 제69조의 3으로 신설된 제도'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와 문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농어업간의 차등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런 문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 삶의질법)"[20]의 제 2조(기본 이념)에서는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 중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는 부분을 통해 쟁점에서 제시한 도시민과의 형평성이 우선시되기보다, 농어업인간의 형평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업과 어업은 동일한 업종임을 시사하는 법 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어업에 차등을 두고 있는 각 불공평 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19) 현대해양(http://www.hdhy.co.kr)(검색일: 2023.4.30.)
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검색일: 2023.5.8.)

〈표 3-5〉 어업과 농업간의 불공평 세제 검토

구분	어업	농업	비고
소득세	어업소득 과세	농업소득 비과세	개선 안됨
	양식어가 부업소득 (3천만 원 이하) 비과세 *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부업규모로 인정	•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 및 일정규모 이하 축산업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 축산업 소득과세 기준은 품목별로 차등화 되어 있음 • 그 외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토지 양도 소득세	어업용 토지 과세 (육상양식장 등)	농업용 토지 감면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69조3항 신설했으나 연장 필요
		• 농업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재산 증여세	어업용 재산 과세 (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 등)	농업용 재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1항 '마,바,사,아' 목 개정
		• 자경농민이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거, '17년 말까지 적용	
부동산 취득세	어업용 부동산 과세	농업용 부동산 경감	2017.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2조 개정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등 대상 50% 경감	
법인세	어업법인 과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업에서 얻는 소득(농업소득)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8조에 의거 전액 법인세 면제	• 소득금액의 경우 3천만 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 어업법인의 경우 소득세 면제되는배당소득은 1,200만 원
면세유	어민이 농민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삭기는 면세유 대상 아님	·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굴삭기(1톤 미만)는 면세유 공급대상	개선 안됨

자료: 수산경제연구원(2017), p.4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양식업 비과세에 대한 국외 사례검토와 함께 국내 1차산업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사례, 농업과 어업간의 비과세 혜택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국외 양식업 비과세(일본과 중국, 기타국 등) 현황과 비과세 확대사례를 검토하면서 비과세 확대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주요 양식국인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별로 양식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식업 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와 동일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분산을 위해 양식기업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양식산업이 국가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세 면제와 더불어 토지세, 수역세 등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두 국가의 경우 양식업에 대한 우대와 농업과의 형평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양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농업과의 형평성으로 양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우리나라는 어가)에 대한 법인세를 농·어업을 같이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수산업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타 산업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양식어업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수산물 수출산업과 양식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국가별 비과세 정책 기조는 식량으로서의 관점, 산업으로서의 관점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식량정책과 1차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국가별 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조세혜택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차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절 국내사례 검토에서는 농수산업의 비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세특례의 개념과 근거를 탐색하고 국가 기조에 따른 조세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가의 농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수산업의 업종별 비과세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서 세법 현황을 검토하고 농업과 축산업의 비과세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서 양식어업이 비과세 확대 논의 측면에서의 차별을 받아왔음을 강조하고,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식량정책 차원에서 양식어업을 더 이상 과거 기준의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04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쟁점 및 합리화 방안

제1절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쟁점

현행 양식어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감면은 산업간 불평등을 야기하여 농·어업인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조가 유지되는 까닭은 오히려 수산물이 식량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더불어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차별적인 감면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 과거의 수산업과 수산물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라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어 정책을 통해 많은 세금이 투여되어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우리 양식어업 생산물들의 가치와 위상을 고려하고 양식어업의 순기능적 역할을 생각해본다면 이제는 비과세

제도가 합리적인 조정될 시기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조세소위원회의 국회회의록을 토대로 비과세 확대 반대논리를 고찰하였다.

1) 주업과 부업의 분류

엄밀히 따져볼 때 양식어업은 농·어업 중에서 총수입금액 및 경영비용이 높은 업종으로 복수업종 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수입금액이 높은 업종이 주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0321 양식어업은 03211 해수면 양식어업과 03212 내수면 양식어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요산업이다. 아울러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양식어업의 분류

03	어업	Fishing and aquaculture
031	어로 어업	Fishing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Aquaculture and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and aquaculture
0321	양식 어업	Aquaculture
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Marine aquaculture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Inland aquaculture

자료: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검색일: 2023.4.20.)

양식어업은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행되어 어로어업을 겸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최근 어가와 농가 간 소득의 변화(어가 감소, 농가 증가)·부채의 변화(어가 증가, 농가 감소) 등도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었다. 아래 〈표 4-2〉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소득세법에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을뿐더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어를 농어가부업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의 농가부업소득 분류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표 4-2〉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소득)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20. 2. 11.〉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어가소득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주·부업의 구분을 다음 〈표 4-3〉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부업어가에 대한 설명은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적절치 않다. 주업과 부업을 나누고 있는 기준이 어업외 수입이 어업 총수입보다 많은 어가로 이를 가늠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로 보여진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통계청 통계설명자료[21]에서 주업과 부업의 판단(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3년)은 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한 것을 주업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이와 같은 구분법은 오늘날의 양식어업을 대입해 보아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어업 주업의

21) 통계청 통계설명자료(검색일 2023.7.24.)

범위를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양식어업의 주업어가의 정의를 〈표 4-3〉의 하단에 신규 주업어가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통계청 어업 소득에 대한 주업어가와 부업어가 용어해설

구분	용어해설
기존주업어가	(정의)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어가 중 어업총수입이 어업외수입보다 많은 어가 - 전문어가: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어가 - 일반어가: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어가
기존부업어가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어가 중 어업외수입이 어업총수입보다 많은 어가
신규주업어가	**(수정안)** 직전사업연도의 양식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가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검색일: 2023.7.24.)

양식어업이 소득세법상에서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1차 산업과 비교해 볼 때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업으로 분류가 되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업으로 분류된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고, 양식어업의 개념을 잘못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을 명확히 해야 추가적으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타 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업종간, 도시근로자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와 소득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농어가의 형평성 논리부터 따져야 한다. 현행 축산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으로 사육두수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하고 있다(집행기준 12-9-1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② 참고).

〈그림 4-1〉 축산 농가 비과세 범위

구분	농가부업규모		기타소득
현행	축산업 사육두수 내 비과세	+	기타의 부업 + 사육두수 초과소득 3천만 원

자료: 저자 작성

아울러,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를 살펴보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농어가부업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면제해주고 있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소득세 집행기준 상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9-1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례

농어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어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레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자료: 국세청(2022), p.11.

또한, 소득세법상 '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 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으로 명시되어 198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축산업은 품목별로 지속적으로 비과세범위를 확대시켜 주었다〈표 4-4〉. 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중요산업 감면제도를 어떠한 측면에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요산업의 범위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농가부업의 축산의 비과세 범위 확대 관련 자료

단위: 마리

구분	젖소	소	돼지	양	닭
1980년 1월	10	20	100	100	1,000
1983년 1월	20	30	150	150	3,000
1986년 6월	20	30	200	300	10,000
1996년 1월	30	30	200	300	10,000
2008년 2월	30	30	500	300	15,000
2012년 2월	50	50	700	300	15,000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연도별 개정안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렇다면 양식어업의 비교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의 비과세는 5천만 원(어로어업 비과세 범위)과 동등한가를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 〈표 4-5〉와 같이 축산 관련 통계를 확보하여 품목별 비과세를 도출해 보았다.

소의 경우 1마리당 농가수취가격을 기준으로 50마리의 비과세 범위를 산출해 본다면 2억 9,400만 원(수입금액 기준), 돼지의 경우 3억 1,300만 원, 닭의 경우 4,900만 원으로, 닭을 제외하고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가 크게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축산업은 위에 제시한 농가부업집행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3천만 원(사육두수 초과분)을 더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또한 소를 제외하면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아 축산농가별 소득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개체별 단가의 차이에 있어서도 닭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에서도 이미 1차 산업 간의 소득과 규모 측면에서 형평성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축산 대표품목의 농가별 소득 및 비과세 혜택 금액 추정

구분	축산		
	소	돼지	닭
사육기간	31개월	6개월	1개월
전체 사육두수('22년 기준, 마리)	3,694,000	11,869,000	88,713,000
가구당 사육마리(평균)	42	2,084	31,865
가구당 기준 가격별 실질 매출가격(원)	247,012,895	931,526,879	103,880,884
가격 평균(농민수취가격기준, 원)	5,870,000	447,045	3,260
마리당 순수익(총수입-사육비)	1,208,000	46,949	290
도축 마릿수(출하량, 월)	220,000	1,500,000	70,000,000
사육농가(가구)	87,784	5,696	2,784
가구당 월 도축마리(평균, 마리)	3	263	25,144
월 가구수입 평균 금액	3,027,431	12,363,676	7,291,667
각 품목별 비과세 기준 혜택 금액(원)	293,500,000	312,931,500	48,900,000
축산농가 소득금액('21년 기준)			65,146

주: 통계청 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의 사육두수는 모돈 제외 수,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는 육계 기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검색일: 2023.4.23.);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어가수(검색일: 2023.4.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검색일: 2023.4.23.); 통계청,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검색일: 2023.4.23.); 한국육계협회(검색일: 2023.4.23.)

농가, 축산농가, 어로어가, 양식어가에서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수산어민(어로+양식)은 '19년 어로어업 비과세 범위 확대 시 크게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축산업의 세부적인 집행기준 배려항목에 비하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3) 대규모 양식어가 소득 문제

양식어가의 높은 소득이 비과세 확대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농업의 규모화된 농가와 동일한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업종·판매금액별 가구수와 함께 업종별 소득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표 4-6〉의 판매금액별 농어가 수 비교를 살펴보면 소득 구간의 구분은 전체 13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상위 소득 구간은 5억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판매 없음 가구'의 비중은 양식어업이 농림수산의 비교 항목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판매금액별 규모 5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은 비교 항목군 중 축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전국 1차 산업의 판매금액별 농어가 수 비교

구분	축산	양식	논벼	식량작물	과수	약용작물
판매 없음(가구)	1.8%	1.5%	6.4%	20.1%	4.9%	10.7%
120만 원 미만(가구)	3.0%	4.6%	14.9%	32.4%	14.6%	20.5%
120~300만 원(가구)	4.2%	5.6%	19.7%	20.5%	13.5%	17.5%
300~500만 원(가구)	4.9%	6.7%	15.9%	9.8%	11.1%	13.3%
500~1천만 원(가구)	9.4%	7.5%	16.3%	7.2%	14.2%	13.1%
1천~2천만 원(가구)	12.5%	9.1%	11.7%	4.3%	14.0%	9.9%
2천~3천만 원(가구)	11.4%	8.4%	5.9%	2.2%	9.7%	5.5%
3천~5천만 원(가구)	13.2%	9.9%	4.4%	1.6%	8.8%	4.5%
5천~7천만 원(가구)	9.6%	8.4%	2.2%	0.8%	4.5%	2.3%
7천~1억 원(가구)	8.9%	9.2%	1.4%	0.5%	2.7%	1.5%
1억~2억 원(가구)	9.3%	13.0%	0.9%	0.4%	1.5%	0.8%
2억~5억 원(가구)	6.6%	11.5%	0.2%	0.1%	0.3%	0.4%
5억 원 이상(가구)	5.2%	4.5%	0.0%	0.0%	0.0%	0.1%

자료: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산물 판매금액별 양식어가(검색일: 2023. 4.27.)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이 양식어가의 소득 수준이 다른 작물에 비해 높다는 점으로, 이는 전체 평균값이 과다하게 해석되고 경영비, 부채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식어업의 시설투자, 경영비용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양식어업의 소득 수준은 규모화를 이룬 업체가 1차 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서는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계 숫자만을 인식해 양식산업을 안정적인 부자산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표 4-7〉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개 업종의 비교를 살펴보면 총수입은 축산 1억 9,801만 원에 이어 두 번째인 1억 7,911만 4,000원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양식어가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은 23.42%로 경영비가 고려된 소득률은 가장 낮은 반면, 축산농가의 소득률은 32.9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양식어가와 축산농가의 자산은 모두 5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축산은 1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반면, 양식어가는 7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가 고려된 부채비율의 경우 양식어가는 22.4%, 축산은 10.5%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영비 과다에 따라 소득률은 낮아지며, 부채비율에 따른 금융비용 또한 굉장히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어민 수입의 많은 부분이 소득의 일부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양식어업의 유입인구, 귀어인구의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할뿐더러 어촌의 유지에도 도움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표 4-7〉 '21년 기준 총수입 대비 소득율과 부채비율

단위: 천 원

구분	농어업 총수입 (A)	경영비 (B)	소득금액 (C=A-B)	총수입 대비 소득율 (D=C/A)	자산 (E)	부채 (F)	자본 (G=E-F)	부채비율 (H=F/G)
어가평균	77,072	57,396	19,676	25.52%	501,865	64,397	437,468	14.7%
어로	41,511	29,598	11,913	28.70%	435,558	42,700	392,858	10.9%
양식	179,114	137,162	41,952	23.42%	692,131	126,657	565,474	22.4%
농가평균	37,190	24,229	12,961	34.85%	585,676	36,592	549,084	6.7%
논벼	29,693	17,355	12,338	41.55%	573,358	12,261	561,097	2.2%
축산	198,010	132,864	65,146	32.90%	976,837	93,123	883,714	10.5%

자료: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검색일: 2023.4.27.)

양식어가 소득구조는 고령화와 인구유입 문제가 불거진 양식산업 경영주가 65세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높은 경영비용과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림 4-3〉과 같이 산업을 지탱하고 미래 발전 도약의 기반이 되는 소득이 안정화된 집단, 즉 중간 허리부분이 빈약한 가분수적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인구유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양식어가 소득은 10년 후에도 이러한 구조를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판매금액별 농어가 수 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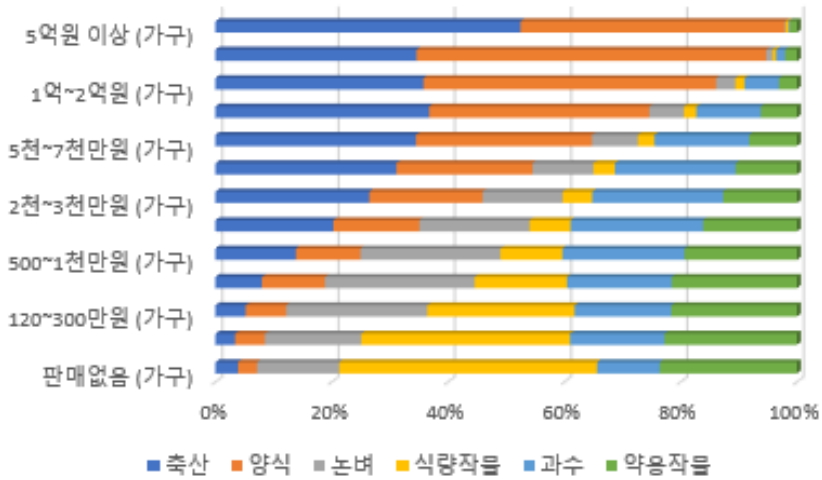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산물 판매금액별 양식어가(검색일: 2023. 4.27.)

2020년 조세소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양식어가의 어가소득은 65.6백만 원으로 전국 소득상위 20~40% 가구(69.8백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소득율과 부채비율을 근거로 도시 근로자, 도시 가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농업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비과세범위 축소 기조

작물재배업 중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채소, 종묘, 화훼 등과, 식량의 범위에서 견지해야 하는 수산양식어업의 생산물은 비교대상으로서 가치가 다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수산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 검토자료에서는 채소와 화훼 등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부 주장과 동떨어진 지적이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 → 지역 소멸 → 국토방위, 지역유지 역할은 누가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때, 이는 농어민이 대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식어가 비과세 확대 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4.)의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08억 원으로 연평균 82억 원이 감소한다고 하였다(〈표 4-8〉 참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400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400억 원으로 농어촌 소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귀어귀촌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4-8〉 양식어업비과세 범위확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단위: 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안 제12조)	-82	-82	-82	-82	-82	-408	-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검색일: 2023.5.1.)

5) 어로어업의 주업 인정에 따른 비과세 확대 효과

현재 양식어업에서는 3,000만 원이 비과세인데 어로를 별도로 5,000만 원을 분리했기 때문에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양식어업 전체가 아닌 30% 혜택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겸업여부 및 비율파악을 통해 양식어업자가 어로어업을 겸업하면서 한도가 확장되는 효과를 보았다는 논리로 통계청 자료(국내통계)와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의 비교를 통해 어로 가구와 양식 가구의 겸업 비중을 확인해야한다(〈표 4-9〉 참고).

〈표 4-9〉 기타 어업인의 어업외 겸업종류(2021년 기준)

단위: 가구

구분	마이크로 데이터						계
	판매장	식당	가공	민박	낚시	기타	
계	9,388	1,075	2,507	470	682	10,242	24,364
어로어가	8,328	1,018	2,168	437	665	8,295	20,911
양식어가	1,060	57	339	33	17	1,947	3,453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IS)(검색일: 2023.5.2.)

어로어업 5천만 원 비과세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양식어업과의 연계를 통해 8천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가는 전체 어업가구 중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겸업가구는 4,000가구로 약 9.44%에 해당한다. 전체 어로어가(3만 2,485가구)의 양식어업(1,181가구) 겸업은 약 3.6%이며, 전체 양식어가(1만 247가구)의 어로어업(2,819가구) 겸업은 약 27.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 확대효과의 수혜를 입은 어업인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10〉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겸업 여부(2021년 기준)

단위: 가구, 명

구분	마이크로 데이터				계	
	전업가구	전업인구	겸업가구	겸업인구	어업가구	어가인구
계	38,732	86,646	4,000	9,325	42,732	95,971
어로어업	31,304	68,241	1,181	2,743	32,485	70,984
양식어업	7,428	18,405	2,819	6,582	10,247	24,987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IS)(검색일: 2023.5.2.)

제2절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1.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 기본방향

수산업계 내부는 같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어로어업 5천만 원, 양식어업 3천만 원으로 적용받고 있는 비과세는 총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과하다는 점과 동시에 양식어업의 부업적용, 타 1차 산업과의 비교 시 양식어업의 소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식어업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가와 농가를 비교해 볼 때, 수익률 및 부채비율이 농가보다 어가가 더욱 열악한 실정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축산농가의 경우에도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비과세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천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작물재배업은 과수, 화훼, 채소 등을 불문하고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어업소득은 소득금액(어로어업 5천만 원, 양식어업 3천만 원)으

로 구분하고 양식어가는 부업소득 3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는 점은 산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로와 양식어업에 비해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과도한 설정이며, 수입금액 계산을 소득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세원 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22)]

이와 같은 문제점과 더불어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입금액이 작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가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전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근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식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수산업 전체를 농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식어업의 지위를 현행 부업 수준에서 주업으로 인정하여 어로어업과 동일한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동시에 농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제도가 농어민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지원 정책이라면 비과세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난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미 설정된 작물재배업의 10억 원 기준을 끌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22) 박주철 외(2021), p. 137.

조세제도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제1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정부는 타 산업에서 지원 및 적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분야의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지원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를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문을 동일하게 과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유사 1차 산업 간 과세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수입금액인가 소득금액인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수입금액이란 업종의 경영주, 혹은 사업주가 벌어들인 금액으로 총매출액을 뜻하고, 소득금액이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뜻한다.

〈표 4-11〉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기준의 차이

비과세 기준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	어로어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소득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수입금액	식량작물재배업외 작물재배업

자료: 박주철 외(2021), p.139.

농업과 같이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를 따질 경우 총매출액을 근거로 했을 때 경비를 제외한 소득율은 41.6%에 달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양식어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 상 경영비용과 부채비율이 타 1차 산업 대비 높고, 소득율(23.4%)[23]이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으로 비과세를 매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소득 비과세와 관련하여 어업과 농업 간,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간 그 적용 기준의 차이는, 같은 1차 산업인 어업과 농업 간, 어로어업이나 양식어

23) 본 보고서 제2장 〈표 2-7〉 '21년 기준 총수입 대비 소득률과 부채비율, 소득률과 부채비율 참조

업이나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 간 형평성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소득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어업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지만 부채수준도 높으며,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과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양식어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양식어업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양식어가 소득 증대, 정부의 추진정책인 귀촌·귀어 촉진, 양식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물성 단백질원의 주요한 공급원인 축산업과 양식어업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양식어업 비과세를 확대함에 있어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에 대해 재정 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는 일단 도입되고 나면 기득권화되어 일몰 연장이 상시화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에 대한 확대를 꺼리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식어업 비과세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면 일단 '소득 5천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매출 10억 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체계적 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비과세 확대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축산업 포함)과 어로어업, 양식어업의 세제지원 형평성 고려하여 양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어로어업 5천만 원, 양식어업을 동시에 5천만 원으로 인정하되, 겸업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주업에만 5천만 원을 인정하고, 부업으로 겸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비과세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개선안의 모든 전제는 비과세 적용 시 농어가부업이 아닌 양식어업의 주업으로 지위 변경을 통해 농가부업비과세 범위에서 탈피하고 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아 양식어업 종사자의 오랜 불평등에서 불거진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그림 4-4 참고).

〈그림 4-4〉 양식어업 비과세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3. 비과세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업의 주업인정을 통해 농가부업이 아니라 주업의 개념으로 인정받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2조 사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항에 대해 다음 〈표 4-12〉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사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령 구문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4-12〉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바 (생략)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 5.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 5.(현행과 같음)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이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에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범위로 개정하고, ①항에서도 다음 〈표 4-13〉과 같이 양식어업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②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를 추가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지막 ③항은 현행 ②항에서 '양식어업'을 추가하여 구문을 개정하되, 관련된 기획재정부령 또한 양식어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표 4-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소득세법 제9조의5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제3절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위와 같은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양식어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여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높아진 비과세 기준에 따라 그간 어업소득을 과도하게 낮게 신고했던 어업인들의 소득 현실화를 통해 통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러한 두 가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산업적, 사회적 기대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표화,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기대효과의 유기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를 2장에 제시한 양식어업의 기능과 매칭하여 범주화하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역 소멸 측면의 기대효과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속담에 견주듯 임시방편이지 효과를 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귀어귀촌의 정책이 인구소멸의 우려로 시작했으나, 정책적 지원으로 젊은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낙후된 환경과 앞으로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젊은 인구 유입은 되었으나, 서비스업, 관광산업 종사자로 귀속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오히려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양식어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불균형적인 수입과 힘든 노동강도에 기인한다. 진입장벽의 완화는 정책적 수단으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는 비과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원된다면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공익형 직불제 중 경영이양제도와 폐업지원제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인구를 양식어업으로 유인하여 경영안정을 담보한다면, 어촌, 양식 지역의 인구 유지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구 고령화, 어업 종사자 감소 문제에 대한 세제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과세 불균형 해소를 통해 어촌과 어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활력 창출하고,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향후 양식어업 분야 종사자 확대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귀어 유인정책은 양식어업인의 소득이 보장될 때 효율성이 극대화 됨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귀어귀촌인의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해 생활기반 정비, 양식어업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

2. 산업화, 지속가능성 측면의 기대효과

인력문제는 양식어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인력과 연결되고 있다. 산업화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젊은 인구의 유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양식어업은 지금 일할 사람도 없지만 후계자도 없다. 65세 이상 경영주 통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득금액 5천만 원 비과세 확대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길게 본다면 방향성은 수입금액 10억 원이 맞는다고 판단된다. 1차적으로 소득금액 5천만 원 비과세 정책을 통해 귀어귀촌,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다면 1차 산업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수입금액 10억 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양식어업 종사자 진입에 견인 정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 후계자 육성, 기술 육성 등을 견인하고, 양식어업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공

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통해 산업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외연적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앞선 노르웨이와 같이 산업에 대한 세제를 철저히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산업 경쟁력 증대에 따른 양식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는 당연한 결과로 가격, 품질과 더불어 양식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양식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지며, 친환경(탄소배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해조류 품목 등의 양식 면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양식어업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나, 향후 확대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환경과 여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식량과 단백질 공급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예상할 수 없는 수요에 따른 불안정한 공급의 문제이다.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단가 하락,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난 지속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수요는 공급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불안정한 경영환경, 늘어나는 부채, 파산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논제를 바꿔보면 안정적 공급은 안정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신규인력의 유입은 양식어업계 활력 창출과 더불어 생산력 증대에 기여해 자동화,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싸고 품질 좋은 양식수산물의 대량적인 공급은 육류 단백질을 대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지역 소멸, 산업화, 지속가능성 등과의 선순환적인 긍정적 기대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면 최종적으로 식량 산업으로서의 기대효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증대, 수산물 수출확대와 같은 정량적 지표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5 참고).

〈그림 4-5〉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의 산업적·사회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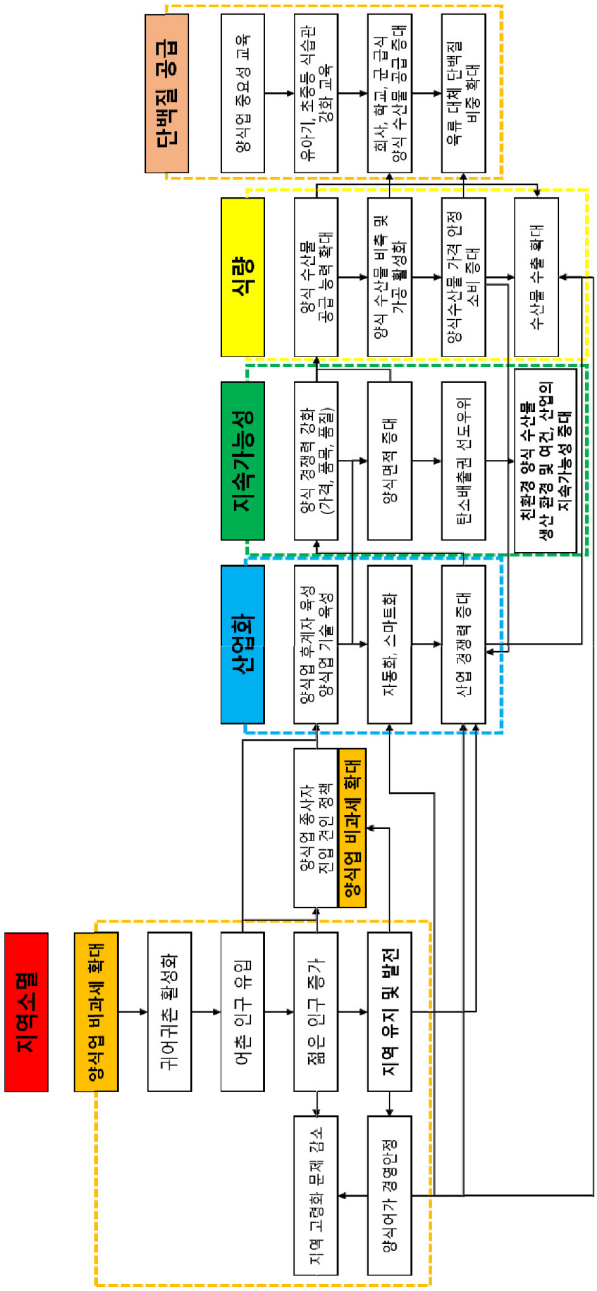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05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과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소비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수산물 소비침체 등으로 인한 양식생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양식어가의 향후 채산성 악화에 따라 양식어가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식어업 역시 농업,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 저해요인이 양식어가 경영에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러-우 전쟁 등에 따라 곡물 등의 식량안보, 세계적 곡물생산량 감소, 무역 둔화는 양식어가의 사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식기자재의 경우에도 대외의존도가 높아 시설 등의 투자비용은 더욱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요금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은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한 '양식어업 현황 및 분석' 에서는 양식어업의 생산동향을 분석하면서 국민의 식습관 변

화로 인해 곡물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 단백질류의 육류나 어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수산업이 식량공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량 공급 측면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양식어업의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측면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식어업의 중요한 기능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동물성 단백질류 식량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양식어업을 더 육성해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우리는 양식어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식어업과 여기서 생산되는 어패류에 대한 낡은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생산이 되지 않으면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며 근거와 대안이 없는 이야기에 가깝다. 미래 양식어업은 기후변화(친환경), 식량안보, 지역소멸, 우리나라의 산업적 특성과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의 기초가 되는 양식어가 분석에서는 양식어가의 문제점과 실태분석을 실시하면서 전기요금, 사료비, 인건비 등의 경영비용의 증가, 낮은 인구유입, 고령화 등의 문제를 통계로 통해 확인하면서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미래산업으로서 양식산업의 역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식어업 비과세 제도 및 세법 검토에서는 양식어업 관련 세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비과세 확대 논의 측면에서의 지속적 차별을 받아왔음을 강조하고,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식량정책 차원에서 양식어업을 더 이상 과거 기준의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례로 제시된 국가별 특성과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

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식어업 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수산업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을 확대하고 혜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식량정책과 1차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외 양식어업 비과세(일본과 중국, 기타국 등) 현황과 비과세 확대사례를 검토하면서 비과세 확대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별로 양식어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업 비과세 쟁점 및 합리화 방안에서는 조세소위에서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와 관련한 반대논리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도별, 소위별 쟁점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한 양식어업의 비과세 확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절 결론

농업은 곡물, 식량작물 생산과 관련한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가 비과세, 축산업의 경우 품목별 일정 마릿수 사육 규모 이하는 전액 비과세이나, 해당 사육 마릿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수산업의 경우 어로어업은 주업소득으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양식어업은 축산업과 같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3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처우는 양식어업을 식량 생산의 주체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 및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음식물판매업 등'의 부업과 같은 수준의 산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행 소득세법상 곡물 등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전액을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식량이라는 인식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농업과의 비과세 범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아직까지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현행 조세 법령상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식량에 대한 오래된 인식과 기준, 방식에 따라서 지원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1차 산업은 헌법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흥해야 할 주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산업 내 존재하는 업종별 지원과 혜택의 차이는 과세 형평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양식어업 비과세 혜택과 관련한 소득세법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산업 간의 차별적 대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드러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관련 법(소득세법)·제도(주·부업 분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어촌 유지의 근간인 양식어업에 대한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어촌의 노동력이 절대적이다.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역시 노동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촌의 노동력 유지와 귀어귀촌을 정책을 위해서는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지원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여러 정책이 한 곳의 목표를 향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양식어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산자원에 대해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양식어업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양식어업 비과세는 장기적으로는 작물재배업과 같은 수입금액 10억 원 비과세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 목표를 통해 농어민 간의 차별적 대우에서 비롯된 불만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실행되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풍요로운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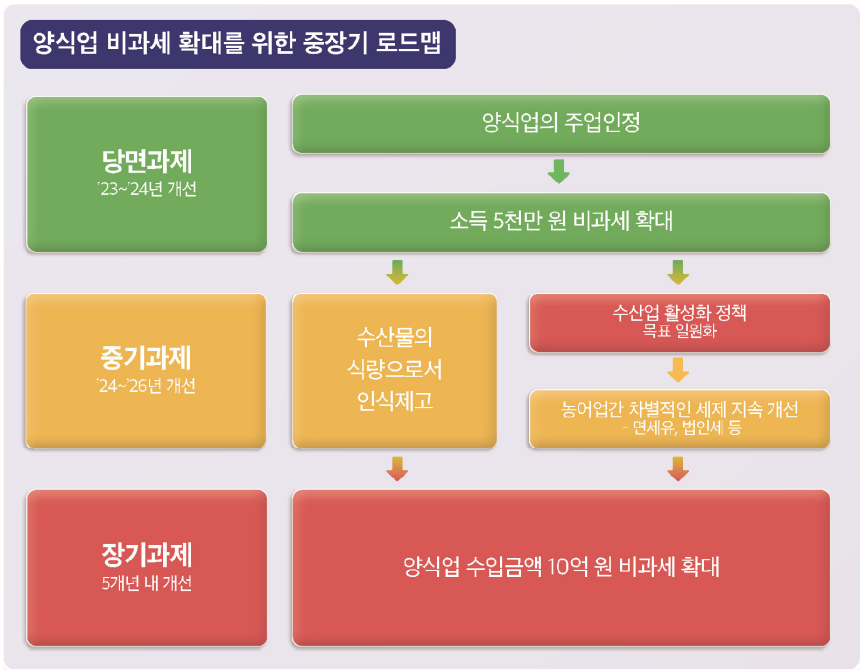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세청(2022), 소득세 집행기준.

국회예산정책처(2020),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사무처(2022.12.),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사무처(2022.12.2.),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호.

기획재정위원회(2020.11.),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I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김기성(1995),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18권, 제4호, pp.43-59.

김미복, 김수석(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보남, 김현동(2010),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vol.10, no.1, pp.216-257.

박주철 외(2021),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회계연구, 제68호, pp.135-152.

서희열 외(2010),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이삼주(201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마창모 외(2022),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연구원(2017), 수산업의 특수성 및 주요 정책과제, p.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수급표, 1인 1일당 공급단백질.

국외 문헌

KPMG(2021,2022), Taxation of Aquaculture.

자문 및 회의 자료

서우회계법인 김기창 회계사 자문(2023.5.24.서면자문).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자문(2023.5.24. 서면자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정책회의자료(2023. 4. 10. 회의자료).

인터넷 기사/보도자료

농축수산신문(2023.5.26.),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34(검색일: 2023.5.28).
어업인 수산(2018.11.15.), 어업인구 초고령화 시대, 대책마련 시급 ,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6(검색일: 2023.08.1.).
식품음료신문(2022.6.27.),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4년 연속 '지속 가능한 단백질 생산자' 최상위에 이름 올려, http://www.thinkfood.co.kr(검색일: 2023.4.14.).
케미컬뉴스(2022.3.14.), '액체 나무'로 대기질을 살려라, https://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검색일: 2023.4.14.).
통계청(2023.1.20.),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25&act=view&list_no=423107&

tag=&nPage=1&ref_bid=(검색일: 2023.4.27.).

한국수산경제(2022.10.17.), 전기료 인상으로 도산 위험 높아진 양식업계,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77(검색일: 2023.6.4.).

현대해양(2019.7.8.), 농업-어업 간 '세제 불평등' 심각,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1(검색일: 2023.4.30.).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45&kosisYn=Y(검색일: 2023.7.24.).

위키디피아, 연도별 뉴스, https://ko.wikipedia.org/wiki/1977-2010(검색일: 2023.5.1.).

법률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527호, 2022.12.1.).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328호, 2023.4.1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422호, 2023.6.1.).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023.7.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6호, 2023.10.1.).

헌법재판소 2007.4.26 자 2006헌바71 결정.

헌법재판소 2001.12.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인터넷 자료

수협중앙회, '20년 수협중앙회 양식어업경영 사전조사, https://suhyup.co.kr/bbs/fei/98/13996/artclView.do(검색일: 2023.5.1.).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http://www.khoa.go.kr/oceanmap/main.do(검색일: 2023.4.18.).

국가통계포털(KOSIS), 어업생산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1&vw_cd=MT_ZTITLE&list_id=K2_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23.4.26.).

국회예산정책처(2016.11.),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https://www.nabo.go.kr/Sub/04Etc/search_ajaxBoard.jsp?func=view&bid=19&arg_id=6080(검색일: 2023.6.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706(검색일: 2023.6.12.).

완도군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wando/sub.cs?m=641(검색일: 2023.5.1.).

2022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https://www.wando.go.kr/contents/13486/fish_survey_2022_3.pdf(검색일: 2023.5.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https://www.ekapepia.com/priceStat/distrPricePork.do(검색일: 2023.4.27.).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어가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B7014&vw_cd=MT_ZTITLE&list_id=F_5_2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4.27.).

_____,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양식품종별 어가 및 양식장 면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B7014&vw_cd=MT_ZTITLE&list_id=F_5_2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4.27.).

_____, 어업생산동향조사, 2022년 품목별 추정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5&vw_cd=MT_ZTITLE&list_id=K2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C%2588%2598%25EC%2582%25B0%2520%253E%2520%25E

C%2596%25B4%25EC%2597%2585%25EC%2583%259D%25EC%2582%25B0%25EB%258F%2599%25ED%2596%25A5%25EC%25A1%25B0%25EC%2582%25AC%25EC%2596%25B4%25EC%2597%2585%25EB%25B3%2584%2520%25ED%2592%2588%25EC%25A2%2585%25EB%25B3%2584%2520%25EC%2596%25B4%25EB%25B2%2595%25EB%25B3%2584%2520%25ED%2586%25B5%25EA%25B3%2584(검색일: 2023.4.27.).

_____, 농림어업조사·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B7003&vw_cd=MT_ZTITLE&list_id=F_5_2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4.26.).

_____,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IS), 해수면어업 가구사항(2021년 기준), https://mdis.kostat.go.kr/svitOppb/svitOppbInfo.do?curMenuNo=UI_POR_P9010(검색일: 2023.5.2.).

_____,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산물 판매금액별 양식어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B7014&vw_cd=MT_ZTITLE&list_id=F_5_2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4.26.).

_____,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2(검색일: 2023.5.1.)

_____, 행정구역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검색일: 2023.5.1.).

_____,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ommonBoardLis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strBbsId=ksictnr&categoryMenu=011(검색일: 2023.4.20.).

_____, 농림어업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B7017&vw_cd=MT_ZTITLE&list_id=F_5_2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4.26.).

_____, 농어가경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EA1501&vw_cd=MT_ZTITLE&list_id=F1E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검색일: 2023.4.27.).

_____,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45&kosisYn=Y(검색일: 2023.7.24.).

통영시 홈페이지, 2020 농림어업총조사, https://www.tongyeong.go.kr/00681/00827/04882.web?amode=view&gcode=3421&idx=625441(검색일: 2023.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전망지 돼지편(2022년 3월호), https://aglook.krei.re.kr/main/uObserveMonth/OVR0000000017(검색일: 2023.4.27).

한국육계협회, 닭고기 시세, http://www.chicken.or.kr/ch_price/price01.php(검색일: 2023.4.27.).

기타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각 연도(검색일: 2023.4.26.).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3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을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2022년

01	선박투자 가치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 연구	박성화
02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스템 가격결정 모형 연구	서정용
03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정지호
04	탄소중립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권장한
05	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헌주
0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원
07	MZ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해양관광 추진방안 연구	최일선
08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	심성현
09	행위자기반 해양공간계획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조성진
10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
11	탄소중립 시대 양식산업 대응전략 연구 - 육상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12	수산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 가공업을 중심으로 -	김지연
13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연구	박수진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테이너 해운산업 대응방안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최건우
15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세원
16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 분야 대응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권보배
17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수영
18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연구	허성례
19	수입수산물 예방적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 IUU 수산물을 중심으로 -	안지은
20	양식수산물 유통 빅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이기영
21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구 - 신남방 지역 ICT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물류 공급사슬 대응방안	최나영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에 대비한 해양분야 대응방안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2022년

01	항만의 탄소중립 이행·관리 표준안 연구	안용성
02	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의 이해관계 분석과 관리방안	윤성순
0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에너지·곡물을 중심으로	조지성
04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윤인주
05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박예나
06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정비 방안 연구	좌미라
07	우리나라 수산종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헌주
08	2050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 연구	김민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II)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회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2022년

01	건화물선 시장 비용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위험관리지표체계 구축	류희영
02	해상운임 예측모형 고도화 연구(Ⅰ)	황수진
03	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한나
04	연안지역발전지수(CoDI) 개발 연구	황재희
05	CGE 기반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해양수산부문 파급효과 분석	임병호
06	글로벌 수산부문 이머징 이슈 분석 모델 개발 연구	한기욱
07	양식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모형 구축 연구 - 굴을 중심으로 -	김철현
08	Network DEA를 이용한 물류기업 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황선일
09	해양수산 사업체 성과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김주현
10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양식 멍게 단수 추정방안 연구	천성훈
11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 -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	박혜진
12	국내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서연
13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Ⅰ) - 자동차, 석탄, 고철, 시멘트를 중심으로 -	최석우
14	해양수산 분야 미래 리스크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Ⅱ)	김찬호
15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적용방안 연구	이종필
16	국가 해양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현욱
17	선박대기시간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연구	조아현
18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상균

수시연구 2023-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1월 28일
발 행 2023년 11월 30일

발 행 인 김 종 덕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Aquaculture Tax Exemption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값 15,000원
93300
9 791168 661349
ISBN 979-11-6866-134-9